

〈南北軍事分科委員會〉

第6次會議會議錄

1992. 7. 16

統 一 院

〈南北軍事分科委員會〉

第6次會議會議錄

1992. 7. 16

統 一 院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 7



1. 一 般 事 項

가. 日 時 : 1992. 7. 16(木), 10 : 00 - 12 : 42 (公 開)

나. 場 所 : 板門店 우리측 지역 『平和의 집』

다. 參席人員

	우 리 측	북 측
위원장	朴庸玉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김영철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위 원	金熙相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任台淳 (통일원 자문위원) 李榮浩 (국방부 대령) 金永鎭 (국방부 대령) 趙商勳 (외무부 심의관) 蔡俊錫 (국방부 판단관)	박용수 (조선인민군 소장) 박성진 (조선인민군 소장) 리길청 (조선인민군 대좌) 김민현 (조선인민군 대좌) 박림수 (조선인민군 대좌) 원동연 (조평통 서기국 부장)
수행원	南相旭, 宋宇燮, 金吉根, 柳鍾烈, 韓秀雄	주길산, 허영하, 조충한, 리석준, 박용국, 박일남

會 議 錄



2. 會 議 錄

<쌍방 委員 입장 및 人事교환>

남(박용옥) : 자, 앉으시죠.

며칠만에 만났죠? 우리가— 지난 번에 6월 19일날... 했죠?

북(김영철) : 예.

남(박용옥) : 한달... 아직 채 안됐구만. 어떻게 지냈습니까?

북(김영철) : 그저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남(박용옥) : 어때 아주 유익한 날... 재미있게 보냈어요?

북(김영철) : 예, 아! 가만— 별 하나를 더 박으셨군요?

남(박용옥) : 예. 어떻게 또 이렇게 군사분과위원회 잘하라고 격려하는 뜻
에서 그랬는지, 지난 6월달에 우리 5차 군사분과위원회의 끝나고...

본래 그때 예정돼 있었죠. 본래 예정돼 있다가 요번에...

북(김영철) : 축하합니다.

남(박용옥) : 감사합니다.

북(김영철) : 별 하나를 더하니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졌는데, 원래 물리학
적으로 보면 그 질량이 속도가 비례를 합니다.

남(박용옥) : 허허허...

북(김영철) : 우리 회담의 추이(推移)를 지켜보면 별 무게가 크게 작용하
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박용옥) : 어디 한번 속도에 비례하는 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북(김영철) : 또 어떤 쪽에는 물리적 개념이 꼭 맞는겐게 아니라, 그 무게가 주위를 잡아 당기면서 또 이 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남(박용옥) : 허허허...

북(김영철) : 제발 그 별이 그렇게는 작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남(박용옥) : 김위원장도 언제 하나 더 달고 나오셔서 내가 축하하는 기회가 빨리 오기를 나도 기대합니다. 곧 이뤄지겠지요.

북(김영철) : 그저 자꾸 달기만 해서 될합니까?

우리 인민군대 장령군관들이 다는 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얘기 있는가 하나까 그 별 - 하면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늘의 별처럼 그 별이 빛나라 해서 그 별을 하나씩 이렇게 주곤 합니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는 그 별을 자주 다는 것보다도 진짜 단 별이 빛을 나게 해야 되는게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박위원장은 집에 따님이 세사람 있는데, 뭐 딸만큼 별수를 달게 된다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적도 있는것 같던데...

남(박용옥) : (폭소) 거 저 우리 - 농담을 알고 계시누만.

아무튼 그런 농담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도 아들들만 선호하기 때문에 아들 딸 골고루 가져라 -

또 딸만 가져도 실망하지 마라 -

그런 뜻에서 우리 그런 재미있는 농담도 하고 그랬죠.

그럼 난 딸이 셋이 있으니 뭐, 앞으로 봐서 딸을 하나를 더 낳든

가, 들을 더 넣든가... 한번 재고를 해 봐야겠어요.(웃음)

북(김영철) : 오늘 이 『평화의 집』에 우리 군사분과회의에서 몇번째 오는 회의입니까? 이거...

남(박용옥) : 세번째죠? 아마...

북(김영철) : 세번째...

남(박용옥) : 이게 6차회의니까, 세번째가 되죠.

북(김영철) : 이 집이 참 이름 좋은 집인데, 『평화의 집』인데... 우리는 그 평화의 집... 평화로 가는 길을 마련하는 회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집에 자꾸 찾아오는데...

자꾸 오기보다도 뭐인가 있어야 되겠는데...

남(박용옥) : 만들어 봅시다!

북(김영철) : 예. 그래서 오늘 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박용옥) : 예. 한번 만들어 봅시다.

북(김영철) : 오늘 그런데 날씨는 상당히 더워요. 가만히 보니까...

남(박용옥) : 날씨는 상당히... 좋은 날씨던데, 요즘 장마철 아닙니까?

아마 북측에서, 북측도 마찬가지로.

북(김영철) : 아직 장마는 시작되지 않았는데 가끔 비는 옵니다.

남(박용옥) :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상당히 좀 가뭄이 있었는데...

요번에 비로 해서 이제 해갈(解渴)이 완전히 됐어요.

북쪽에서는 가뭄 별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죠?

북(김영철) : 예. 않았습시다.

그런데 가뭄보다도... 7월13일날이 초복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중복, 말복까지는 더위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남(박용옥) : 그렇죠. 그래요.

북(김영철) : 옛날부터 혹서기(酷暑期)라는 말이 있지않습니까?

아마 삼복더위를, 그 누구 말파나 더위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피서(避暑)라는 말은 또 혹서기가 있으니까 피서라는 말이 생긴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더운 7월에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어정해지죠. 쉬운 일도 어려워지고, 어려운 일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해야할 일을 놓고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덩다나니까 어물어물하고, 날짜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정어정 보내고...

남(박용옥) : 우리는 그렇게 보내서는 안되지.

북(김영철) : 옛날 사람들이 7월을 '어정칠월'이라고 했지.

남(박용옥) : 어정어정 7월... 어정쩡하다?

북(김영철) : 어정 7월, 어물 7월이라- 우리 옛날 사람들이...

그리고 하두 더위가 덩다나니까 그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거워 보인다
다는 겹니다.

남(박용옥) : 으흠.

북(김영철) : 그래, 놓고 보면 이 7월달이 상당한 정도로 무슨 일하기 힘든다 이런 말 같습니다.

그런데 7월을 돌이켜보면 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인간의 심장속에 지닌 열정이 때때로는 자연의 혹서기를 서슴없이 뚫고 나가는 때도 많아요.

근데 그 3년전 7월이겠습니니다.

그때 그쪽의 립수경 대학생이 7월달에 평양축전에 참가했었고, 20년전 72년 7월에는 7·4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남(박용옥) : 그렇지.

북(김영철) : 우리 인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대로, 말하자면 흑서기도 뚫고 7·4공동성명으로 나왔단 말예요.

39년전 7월이니까 53년도죠. 전쟁을 바라지 않는 인민들의 마음이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던 말예요.

49년전 7월에는 2차세계대전 종말인데, 포츠담에서 아마 스탈린, 처칠, 루즈벨트가 전후처리(戰後處理)에 관한 회담이 있었고...

그래, 가만 놓고 보면 7월이 더워도 인간은 할 일을 다합니다.

그때 놓고 보면 또 나쁜 일도 많았어요. 가만보면...

남(김희상) : 7월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셨구만요.(웃음)

북(김영철) : 예, 7월7일에 놓고보면 또...

남(박용옥) : 아, 그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나오셨어.

북(김영철) : 7월 7일 놓고 보면, 일본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대륙침략한 것도 7월 7일이지. 그러니 7월이...

남(박용옥) : 32년? 32년인가...

북(김영철) : 그렇죠. 7월 15일이...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원자탄도, 미국사람들이 7월 15일에 첫 원자탄을 만들었던 게죠.

놓고 보면 이 7월달이 꼭 무슨, 사람들이 한다 하면 또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회담이 비록 더위 속에서 진행되지만 그래도 이 아직 남은 일자가 얼마 안되는 것만큼, 아마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회담을 추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박용옥) : 그래요. 이게 지금 7월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는데 우리 군사분과위원회는 이 7월을 좋은 달로 만들어 봅시다.

이제 9월 1일까지 약속한 날짜도 별로 남지 않았는데, 좀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 또 6차 회담을 우리측 지역에서 하게 됐으니 관례대로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김영철) : 오늘 회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박용옥) : 우린 관례대로 하는거 뭐 지장이 없는데,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또 무슨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원하시면 공개로도 하고...

북(김영철) : 오늘 좀 공개로 해 볼까...

남(박용옥) :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북(김영철) :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진전(進展)이 있습니다.

내외의 인민들이 도대체 이 군사분과위원회가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느냐... 그 까닭을 알고 싶어해요.

그래, 속 시원히 한번 터쳐놓고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박용옥) : 아 그거 귀측에서 공개 원한다면 반대하지 않아요.

..

공개로 합시다. 그럴줄 알았으면, 공개로 할 줄 알았으면 우리도 기자들이랑 다 좀 데리고 들어올걸 그랬구만.

오늘 북측에서는 기자들이 많이 온 모양이죠?

북(김영철) : 아니, 무슨... 우린 원래 그저 약속대로, 이미 합의한대로...

남(박용옥) : 오늘 좋습니다. 김위원장께서 공개로 제의하시니까 우리도 쾌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 여섯번째 회의니까 모든 회의진행은 관례대로 하기로 하고...

먼저 제가 기초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김위원장이 기초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북(김영철) : 예. 오늘 좀 좋은, 긍정적인 안을 많이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남(박용옥) : 어디 서로 기대해 봅시다.

(기자들을 향해) 자, 장내정리 좀 해주세요.

오늘 시간 좀 절약해서 토의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기초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측 기조 발언>

북측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땅에서 전쟁과 침략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려는 숭고한 역사적 소명에 따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불가침 분야와 관련한 부속합의서 작성을 위해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를 이곳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남북군사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하고 이에 따른 불가침 분야의 관련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부속합의서 작성에 대한 쌍방의 견해와 입장차이를 확인하고 제7차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대로 9월 1일까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난 6월 19일 개최된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부속합의서의 명칭과 구성체계, 그리고 일부 내용에 대한 대체토의를 통하여 쌍방의 입장과 견해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속합의서 작성과 관련한 쌍방의 입장과 견해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부속합의서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도 진전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부속합의서 작성을 위해 군사분과위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남북쌍방

이 부속합의서 작성에 관한 공통된 인식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측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4조와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정한 바에 의거하여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결과에 따라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속합의서의 속성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할 것과 현실성을 토대로 구체화시켜 실천성이 보장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구체적 대책은 당연히 쌍방이 전쟁과 침략을 막기 위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분야에서 전쟁과 침략을 막기 위해 합의해 놓은 기본틀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부속합의서 작성에 있어 원칙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사이에 전쟁과 침략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합의되어 있는가를 바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의 불가침 합의는 그 합의서 전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침략과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쟁은 전쟁을 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에 의하여 야기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군사력이 때로는 전쟁을 결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전쟁은 전쟁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발적 사태로 인해 야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가침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전쟁예방 조치들은 이들 세 가지 측면에서의 조치, 즉 전쟁을 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포기과 과도한 군사력의 규제, 그리고 우발적인 전쟁의 가능성 제거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겠습니까.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들 세가지 측면의 전쟁예방 조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전쟁을 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포기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서는 제1장 남북화해 뿐만 아니라 제2장 남북불가침 분야중 제9조에서 무력불사용, 제10조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규정되어 있고, 더 나아가 이를 위한 이행조치로서 제12조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포기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군사력의 규제에 관해서는 제12조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과 검증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래 쌍방간에 적대감이 해소되고 이해가 증진되어 신뢰관계가 확고히 구축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전쟁과 침략의 위험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군비감축을 약속한 것은 전쟁예방을 보다 더 확고히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우발적 사태에 의한 전쟁발생의 예방 조치에 관해서는 제9조와 제10조가 분쟁의 가장 현실적 원인중의 하나인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쌍방이 각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이와 같은 조치의 일환인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들 세가지 측면에서의 전쟁예방 조치들과 관련하여 군사분과위원회가 해야할 일과 군사공동위원회가 해야할 일로 나누어 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과위원회는 무력불사용을 위한 대책, 우발적 무력충돌에 의한 전쟁방지를 위한 대책, 그리고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대책을 협의·해결하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과위원회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충실하게 이들 대책들을 부속합의서에 담아야 합니다.

즉 제12조에 명시한 사항과 관련된 조치들은 제외하고, 무력불사용과 우발적 무력충돌로 인한 전쟁을 예방하는 조치들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향후 운영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수행에 있어서 혼란이 예상되며 남북군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귀측이 지난 제5차 군사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부속합의서 수정안에 대한 우리측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귀측이 지난 제5차 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해당 조문을 반복 기술하던 형식을 탈피하고 우리측의 『장』편성의 형식에 맞춘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부속합의서 토의를 위해 일보 진전된 자세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귀측 안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귀측안의 제1장은 무력불사용입니다.

귀측안 제1장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지침에 위배되거나 전쟁에 방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귀측안의 제1조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한대로 마땅히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군사적 신뢰조성과 단계적 군축문제를 협의할 때 다룰 문제입니다.

귀측안 제3조는 정당한 일상적 군사활동도 상대방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게 하는 등 그 개념이 모호하여 오히려 쌍방간에 의견대립과 분쟁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귀측안 제4조는 전쟁예방에 필수적인 정찰활동을 금지시켜 기습공격 준비 활동을 은폐시킬 수도 있는 조항으로서 전쟁을 예방하려는 불가침 기본정신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귀측안 제6조 외국의 침략행위에 대한 불지원, 불가담 의무는 국제연합헌장 등 국제법상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귀측안의 제2장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귀측안 제2장은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조치와 우발적 침범시 무력충돌방지 조치들을 긴급 및 사후조치들과 혼합구성함으로써 분쟁의 예방적 조치와 분쟁발생시 사후조치인 평화적 해결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도 치밀하지 못하고 긴급 및 사후조치도 지극히 형식적·선언적 수준의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귀측안 제10조는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토록 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 제12조 및 제14조에 합의된 사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식적·선언적 수준의 내용만을 담고 기 합의사항을 부정하는 것은 귀측이 부속합의서를 통하여 우발적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성실하게 마련하려는 자세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측안의 제3장은 불가침 경계선입니다.

귀측안 제13조는 “동해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위도상으로 연장한 선으로 하며, 서해에서는 정전협정 해당 조항에 따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계선과 구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에는 해상경계선에 관한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이후 지금까지 남북 쌍방은 서로의 관할구역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서도 남북간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것입니다.

더구나 제15조에서 군사공동위원회가 불가침 경계선 보장문제를 다루자는 것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불가침 경계선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장하자는 것인지 그 개념부

터가 석연치 않습니다.

귀측안의 제4장은 군사공동위원회입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서 그 임무와 기능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금년 5월 18일부로 그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별도의 합의서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에 대하여 부속합의서에 또다시 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귀측안의 제5장은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입니다.

군사직통전화는 우발적 무력충돌 사태의 발생과 같은 긴급상황에서 효과적인 긴급 통신수단이 보장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현재 남북간에 사용되고 있는 『전화통지문』 교환방식의 통신수단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현 남북직통전화 운용상의 전화통지문 교환방식은 난청 등으로 인해 오해와 오보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송수신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발적 무력충돌과 같은 긴급사태시 분초를 다투는 상황하에서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오해나 오보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성마저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직통전화는 일반 통신수단과는 달리 신속·정확성이 보장된 통신수단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측이 지난 제5차 회의에서 제시한 부

속합의서 수정안은 장 편성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일보 진전되었으나 그 구성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전쟁과 침략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도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지침에 맞지 않거나 구체성과 실천성이 결여된 조문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측이 지난 5월 25일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시에 수정 제시한 부속합의서 안은 전쟁과 침략방지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지침에 알맞게 작성된 안입니다.

우리측은 여러차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귀측에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이러한 기준을 무시한채 구성체계도 불합리하고 그 내용도 실천성이 결여된 부속합의서 안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인 토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1개월 반 밖에 남지 않은 부속합의서 작성시한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부속합의서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를 지연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현시점에서는 또다시 과거와 같은 대결구조의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대화에 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쌍방이 호양의 정신을 갖고 진솔한 자세로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측은 바로 이와 같은 진지한 입장에서 쌍방간에 실질적 토의를 위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귀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우리측의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남북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수정안)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2장에 규정한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 1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인원, 물자, 장비·등이 상대방의 관할구역 안이나 밖에 소재하는지를 불문하고, 이들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무력이란 정규군, 비정규전 조직, 유사군대 조직, 기타 무장된 조직의 구성원과 무기, 장비 등의 모든 무장세력을 말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 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여 침략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체제 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무력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일단 침략행위를 구성하며, 특히 다음의 행위는 명백한 침략행위로 규정한다.

- ① 어느 일방의 군대가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상대방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
- ② 어느 일방의 군대가 상대방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총격, 포격, 또는 폭격을 하거나 기타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 ③ 어느 일방의 군대가 상대방의 군대를 공격하는 행위
- ④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무장단체, 무장집단, 또는 비정규군을 보내거나 이들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 ⑤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관할구역에 지하갱도를 만들거나 잠수함 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상대방 관할구역 수중으로 침입하는 행위

제 3 조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과실,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쌍방의 무장세력 사이에 의도되지 아니한 적대행위가 이루어져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① 남과 북은 자기측 관할구역 밖의 해상 및 그 공중에서 국제법 또는 국제관례에 적합하게 정지하여 있거나 이동중인 상대방의 선박, 함정, 항공기에 대하여 모의공격 행위나 진로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해상, 또는 공중에서의 선박, 함정 및 항공기의 통항은 남북쌍방이 지금까지 준수하여 오고 있는 관행에 따라 상대방 관할구역의 외곽을 통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남북사이의 합의에 의한 통항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남북쌍방이 상호 합의한 상봉점 및 항로대를 따라 무해통항을 허용한다.

- ③ 접경구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항공기는 군사정전협정 및 이의 부수 합의사항에서 정한 규정과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관례에 따라 인정된 식별표지를 하여야 하며, 이들 협약 및 관례에 따른 신호규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야포나 미사일 또는 로케트가 과실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상대방의 수도권으로 발사되어 쌍방간에 전면적인 무력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 무장세력의 구성원이나 함정, 항공기 등 수송수단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또는 무장세력 구성원의 고의가 아닌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 관할구역을 우발적으로 침범하였을 때 쌍방사이의 무력충돌이 발생·확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① 남과 북은 상대방이 자기측 관할구역에 대하여 우발적 침범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경고를 하여야 한다.

경고 및 신호방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호규정에 의거하되,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② 상대방 관할구역을 우발적으로 침범한 어느 일방의 무장세력은 적대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호규정에 의거하여 상대방에게 적대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남과 북은 자기측 관할구역에 우발적으로 침범한 상대방의 무장세력이 제②항의 규정에 따를 경우, 이들에 대하여 공격을 자제하고 그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남과 북은 자기측 관할구역에 우발적으로 침범한 상대방의 무장세력에 대하여 적법한 조사를 거쳐 지체없이 귀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귀환조치 시한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항공기, 또는 선박이나 인원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안으로 긴급피난하였을 경우 긴급대피를 허용하고 가능한 한 그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7 조 이 합의서는 자기측 관할구역을 침범한 상대방의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항공기에 대한 임검, 수색, 구인, 나포의 권리와 국제법상 인정된 관할구역 밖으로의 계속추적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이 합의서는 적법한 무력행사에 관한 국제연합헌장의 규정과 남북이 각기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 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 9 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우발적 침범이나 쌍방사이의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확대방지와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우발적 침범이나 무력충돌사건 현장의 지휘책임자는 자기측 군사당국자(국방부장관/합참의장 : 인민무력부장/총참모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 ② 제①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사당국자는 상대방 군사당국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자기측 무장세력의 적대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
- ③ 상대방 군사당국자는 제②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는 즉시 자기

측의 적대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

- ④ 쌍방 군사당국자는 적대행위의 중지를 확인함과 함께 사전해결 및 사후처리를 위한 긴급협의를 실시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위반사건과 관련한 조사의 실시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측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이 합의를 위반한 자기측 인원을 처벌하여야 하며, 위반행위로 인한 책임을 진다.

이 합의서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측은 상대방에게 위반책임자의 처벌여부에 관한 확인과 원상복구, 손해배상, 사과,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12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조 2항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한다.

제13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후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 4 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4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남북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이하 “군사직통전화”라 한

다)를 설치·운영한다.

- ① 군사직통전화는 남측의 국방부장관과 북측의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설치한다.
- ② 쌍방은 전신타자기 2회선과 모사전송기 2회선, 전화기 2회선을 설치하고, 유선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로 무선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③ 쌍방이 설치한 전신타자기, 모사전송기 및 전화기는 쌍방간에 상호 통신이 가능한 기종으로 선정한다.

제15조 군사직통전화는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 ① 군사직통전화는 24시간 운용하며, 매 6시간마다 통신망 점검을 실시한다.
- ② 쌍방간 긴급통신은 전신타자기를 사용하여 송수신을 하며, 모사전송기로 수신을 확인하고 전화기를 사용하여 통신내용을 확인한다.
- ③ 쌍방은 군사직통전화를 통하여 비방·중상하거나 선전선동하지 아니한다.
- ④ 기타 통신문의 양식, 우선순위, 통신절차, 통신보안문제 등 실무적 운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군사직통전화의 통화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남측은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으로 하며, 북측은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으로 한다.
- ② 쌍방은 각기 15명 이내의 군사직통전화 운용근무자를 임명하고 그

명단을 상호 통보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술적, 실무적 사항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10일 이내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회의를 갖는다.

제18조 군사직통전화를 설치함에 있어서 자기측 지역에 설치하는 모든 장비와 이에 따르는 비용은 각기 부담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군사직통전화에 이상이 있을 경우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이를 통보하고 각기 자기측 지역을 책임지고 보수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의 고장은 공동으로 수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통화내용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쌍방이 합의하는 일시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 5 장 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준수사항

제22조 남과 북은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문제에 대하여는 군사분과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해결한다.

제 6 장 수정 및 발효

제23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 석 대 표

북측대표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무원총리 연 형 목

우리측의 부속합의서 수정안은 이상과 같습니다.

이 수정안은 귀측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군사분과위원회가 작성해야 할 부속합의서의 기본취지를 살려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기본정신인 전쟁과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운영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과 기습공격 능력을 감축하기 위한 단계적 군축 및 검증조치들이 협의·추진될 경우 한반도에서는 전쟁과 무력충돌의 예방을 위한 보장조치들이 충실하게 갖춰질 것입니다.

우리측 안의 제1장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에는 무력불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과 함께 모든 형태의 침략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우발적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측 안은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무력충돌을 야기시킬 위험한 군사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우발적 침범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력충돌이 야기될 수 있는 위험한 군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는 쌍방의 관할구역 밖에서 할 일, 쌍방이 맞대어 있는 휴전선 인근에서 할 일과 자기 관할구역안 후방지역에서 할 일로 명백히 구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우발적 침범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발적 침범을 한 측이 취해야 할 조치와 의무사항, 그리고 피침범측이 무력사용을 자제하고 확인 및 무사귀환 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발적 침범시 무력충돌을 막아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쌍방간에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자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취지에 입각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측 안은 제3국과의 문제를 고려하여 관련 국제법은 물론 유엔헌장과 국제협약을 존중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남북 어느 일방이든지 제3국에 대하여 침략행위를 하거나 국제사회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평화지향적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측 안의 제2장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우리측 안의 제2장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분야 제10조에 의거

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쌍방간에 취해야 할 긴급 및 사후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장에는 우발적 무력충돌 사태나 우발적 침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확대방지와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조치를 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하며 분쟁을 야기시킨 책임을 해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측 안의 제3장은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입니다.

우리측 안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 의거하여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해상불가침 구역을 구분하여 조문화하였습니다.

불가침 경계선에 관한 규정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만으로 충분합니다.

현 시점에서 만일 추가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활발히 실시될 것에 대비하여 불가침 경계선 구역의 통과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예측하고 필요한 통과규정 등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는 교류·협력분과위원회 등에서 관련 부속합의서 실천시에 문제가 제기되면 군사분과위원회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측 안의 제4장은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입니다.

우리측 안은 군사적 긴급사태 발생시 전신타자기에 의한 긴급 문서통신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의사소통을 보장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의 발생이나 이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측 안의 제5장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4조에 의거하여 전쟁방

지를 위한 추가적인 불가침 이행·준수 문제 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해 남북군사분과위원회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측 수정안의 구성체계는 이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문에서 쌍방이 합의한 틀에도 맞으며 내용전개도 현실성을 토대로 구체적 행동지침들을 담고 있어서 실천성이 보장된 안입니다.

특히 우리측 수정안의 제1장과 제3장은 구성체계 면에서 귀측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한 안임을 지적해 둡니다.

나는 귀측이 우리측의 수정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면 이제 명칭과 구성체계 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사실상 없어진 만큼 본격적인 내용토의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속합의서 작성을 약속한 9월 1일까지 45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쌍방간에 부속합의서의 구성체계와 내용에 대한 대체토의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체토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 접촉을 통해 문안정리를 함으로써 늦어도 9월 1일까지는 쌍방의 군사분과위원장들이 부속합의서 최종합의문에 가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부속합의서 내용에 관한 실질적 토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박용옥) : 오늘 이 말미(末尾)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서로 기초발언 교환하고 또 좀 견해를 추가적으로 교환한 다음에 부속합의서문제에 대해서 좀 본격적인 토의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위원장, 기초발언 하시죠.

북(김영철) : 수고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가지고 들었고, 또 제가 기본연설문을 보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준비한 발언을 하고 몇가지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측 기본발언>

남측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북남불가침부문의 부속합의서를 만들기로 민족 앞에 약속한 9월 1일까지는 이제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쌍방위원들은 부끄럽게 허송한 지난 120여일간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하여 랭정하게 돌이켜보고 남은 40여일간을 결실있게 보내겠다는 각오와 결심 밑에 오늘 열린 군사분과위원회 제6차회의에 성실히 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 민족 앞에 엄숙히 확약한 북남합의서를 하루 빨리 리행하려는 진지한 립장으로부터 군사분과위원회 첫회의때 벌써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안을 성의있게 준비하여 내놓았을뿐 아니라 4차회의때에는 귀측의 주장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인 수정안을 내놓았으며 5차회의때에 또다

시 귀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장제목을 단 수정안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모색해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군사분과위원회 제1차회의로부터 5차회의에 이르는 전 기간에 걸쳐 문제토의를 체계적으로 지연시켜왔습니다.

귀측은 우리측의 강한 지적을 받고 4차회의때에 비로소 이미 내놓은 병신부속합의서를 바꾸어가지고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직통전화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기계적으로 합쳐놓은 것이였습니다.

더구나 귀측은 부속합의서안을 애당초 불성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왔을 뿐 아니라 불가침리행과 아무런 인연도 없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문제토의를 지연시켜왔습니다.

북남합의서에는 불가침부문 조항들 가운데서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 실천적인 것과 비실천적인 것을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이 없으며 어떤 조항의 리행대책은 부속합의서에서 제외시켜도 된다고 규제하여 놓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침부분의 때 조항들은 어느 것이나 다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절박한 문제들이며 모든 조항들을 하나의 통일적 과정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북남합의서의 기본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북남합의서의 이와 같은 요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 무슨 《현실성》에 대해 운운하거나 불가침을 리행하는 데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불발탄》에 비유하면서 그것을 당장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실천성》이요 뭐요 하면서 직통전화설치와 같은 《쉬운 것》만 하자고 고집해 나섰습니다.

더욱 문제로 되는 것은 귀측이 불가침부문의 조항들 가운데서 어떤 것은 군사공동위원회 소관에 속하고 또 어떤 것은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에 속한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일부 조항들의 리행대책을 꾀버리려 하거나 외면하려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북남합의서는 말 그대로 북남 쌍방의 합의문건인 것만큼 그 어느 일방도 제 나름대로 해석하거나 제 마음대로 어기려 한다면 그것은 그 누가 보아도 합의서에 대한 불순한 태도라고 밖에 달리는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측이 분과위원회 회의들에서 들고 나왔던 《당사자해결》, 《균형추진》, 《경중완급》론에 대해 말한다고 해도 그것들 역시 문제토의를 지연시키기 위한 꾀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귀측은 이와 같이 분과위원회회의에서 지연전술을 쓰는 한편 회의장 밖에서 북남관계를 격화시키는 방법으로 부속합의서 토의에 장애를 조성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측은 군사분과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시작하던 첫시기부터 벌써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중지로 생긴 이른바 《군사적 공백》을 메운다고 하면서 유명무명의 각종 전쟁연습들을 더 크게 더 자주 벌려왔을 뿐 아니라 다음달 19일부터는 대규모적인 《한》미연합 《포커스렌즈》훈련을 벌리기로 하였으며 우리의 있지도 않는 핵개발문제를 걸고 제1, 제2의 《핵소동》을 연속 벌리면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방침까지 내세우고 부속합의서 작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왔습니다.

그러면 귀측이 과연 어떤 리유에서 불가침리행을 그토록 지연시켜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건대 그것은 귀측이 아직도 외세의존적 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북남합의서의 다른 모든 분야가 다 그러하지만 특히 우리 군사분과위원회가 책임진 평화문제, 불가침문제는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그것은 철저히 민족주체적 립장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더우기 지금 일부 사람들이 우리 나라가 통일되어 강대해지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는 조건에서 대국들의 도움으로 평화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여전히 북남합의서의 리행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측의 요구에 순종하면서 불가침의 리행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귀측은 외세에 의거해서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대해 똑똑히 알아야 하며 이제 더 이상 남에게 평화를 청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우기 북남합의서가 탄생된 오늘 군사문제, 불가침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유엔헌장》이나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협정들을 끌어다 붙일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북남합의서와 북남쌍방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 협정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한다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 협정에 비해 북남합의서를 우위에 놓고 모든 것을 고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와 실천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측은 북남합의서리행문제를 《유엔헌장》과 다른 나라들

과 맺은 조약이나 국제협정에 복종시키는 방법으로 미국과 맺은 군사조약을 어느 때까지 지속시키면서 미군을 남조선에 계속 눌러앉혀 놓기 위한 구실을 마련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측이 불가침리행을 지연시키려 하는데는 매우 좋지 못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측이 불가침에 합의해 놓고도 지금에 와서 그 누구의 힘을 빌어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방법으로 그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군사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부속합의서 토의가 정치나 협력, 교류 분과위원회에 비해 뒤떨어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귀측의 부당한 처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침략과 전쟁이 없는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보려는 겨레의 간절한 소원을 하루 빨리 실현하려면 더이상 우리의 회담을 공전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본 군사분과위원회에서 탄생시켜야 할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의 견해를 다시금 밝히려고 합니다.

첫째로, 불가침리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는 철두철미 불가침부문의 모든 조항의 리행대책을 다 담은 포괄적인 단일합의서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쌍방이 민족 앞에 확약하고 선포한 북남합의서와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기본 요구일 뿐 아니라 불가침부문의 모든 조항들이 서로 련관되어 하나의 통일적 과정 속에서 그 리행대책이 세워

지고 실천되어 나가야 할 군사적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부속합의서가 불가침부문의 전반적인 리행대책이 아니라 시행에 필요한 별도의 《부수적인 규정》이나 《우선적인 조치가 요망되는 사항》을 담은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측의 이러한 주장은 본래의 의도는 어떻든 불가침리행을 무한정 끌려는 지연전술로밖에 달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가침을 위한 부속합의서는 철저히 포괄적인 그런 합의서로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수정안에서 불가침 경계선 문제를 포함시켜 나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둘째로, 불가침리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는 불가침을 철저히 리행할 수 있는 대책들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리행대책이 안받침되지 않는 불가침은 사실상 빈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가침리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불가침을 가장 철저히 리행하고 근원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책들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측은 쌍방이 직면하고 있는 군사적 현실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불가침을 리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실천적인 대책들은 소외시하거나 제외시키려 하고 있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같은 부차적 문제의 해결대책에 대해서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방금 귀측 기초발언에서 말한 우리의 1장 1항, 우리의 1

장 3항, 우리의 1장 5항을 무턱대고 문제시하면서 반대하는 것이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셋째로, 불가침리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는 합의하기 쉽게 공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속합의서를 합의하기 쉽게 공정하게 만들자면 우선 그것을 제멋대로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북남합의서를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북남합의서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부속합의서의 형식과 내용을 규제하는 기준문건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북남합의서 《제2장 북남불가침》부문의 본래 조항들은 지난번 회의까지만 해도 모두 형클어서 어느 것이 어느 조항의 리행대책인지 잘 나타내지 못하게 장제목도 설정하고 조항들도 규제해 놓았습니다.

다행히도 125일이 지난 오늘에 비교적 접근시켜 나왔습니다.

부속합의서를 합의하기 쉽게 만들자면 또한 불가침리행 대책들을 너무 일반화하거나 너무 세부화, 구체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측은 지금 부속합의서를 세부화, 구체화할수록 실천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세부화, 구체화는 토의에서의 복잡성과 난관을 조정할 뿐 그것이 결코 실천성의 기준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부속합의서의 실천성여부는 어디까지나 불가침에 관한 리행대책을 명확하게 담았는가 담지 못했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가 불가침을 리행하는 단계에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세칙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속합의서의 지나친 세부화, 구체화는 필요 외의 것으로 밖에 될 수 없습니다.

부속합의서를 어떻게 만들겠는가 하는 우리의 원칙적 견해는 대체로 이상과 같습니다.

귀측에서도 그동안 충분히 연구해 보았겠지만 우리가 내놓은 부속합의서안은 북남합의서의 기본요구에 맞게 불가침분야의 모든 조항의 리행대책을 빠짐없이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제목으로부터 내용전개에 이르기까지 불가침을 실질적으로 리행하고 담보할 수 있는 대책들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우리의 부속합의서는 불가침을 가장 철저히 리행할 수 있게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나라의 평화문제, 군사문제를 주체적 립장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 가장 합리적이며 정당한 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측위원 여러분!

우리는 부속합의서 토의를 더이상 지체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더 문제토의를 지체시킨다면 민족 앞에 불가침리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내놓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6차회의는 제8차 북남고위급회담에 부속합의서를 내놓느냐, 못내놓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인 회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분과들에 비해 뒤떨어진 것을 오늘 회의를 잘함으로써 반

드시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우리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리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준비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박용옥) : 수고했습니다.

북(김영철) :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남측에서 제기한 발언에서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 토의를 위해서 간단히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귀측의 몇가지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우리 군사분과위원회는 결코 이 김영철이 군사분과위원회가 아니요, 또 박용옥이 군사분과위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군사분과는 정치분과나 협력교류분과와 같이 통일을 바라는, 평화를 바라는, 불가침을 빨리 실현할 것을 기대하는 온 민족이 만들어낸 그런 공동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기본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군사분과위원회를 비롯해서 분과위원회 사업들이 부진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사분과위원회 사업은 더이상 수수방관(袖手傍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치분과는 벌써 지난번 회담에서 다 제목도 일치시켰고, 서문도 일치시켰고, 장제목도 접근했어요.

협력교류분과는 조항별 합의토의에 이른 단계에 이르렀고.

유독 우리 군사분과만은 군사분과는 무슨 장제목, 조항별 내용은 둘째치고 이 기본합의서 제목도 우리가 통일시키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 나는 이제 내 기본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전적으로 귀측의 립장과 태도와 많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125일이 지난 다음에 수정안을 가져온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회담장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놓고 보면 이 불가침리행이 귀측의 진짜 의지인지 하는게 의심스럽습니다.

말하자면 핵문제(核問題)에 대한 이러저러한 우리에게 대한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 뭐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는 방침에선 변함이 없고...

뭐 현실적으로 군사분야에서는 말씀드렸지만 팀스피리트훈련이 끝난 다음에 전선지대에서, 동해에서, 서해에서, 종심에서 우리를 본다 하는 그런 군사연습들이 더 크게, 더 자주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군사적인 문제를 직접 책임진 큰 사람들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再開)하겠다고 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부터는 『을지 포커스렌즈』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귀측에서 진짜 불가침을 하자는 것인가, 안하자는 것인가... 불가침을 리행하자는 것인가, 안하자

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 우선 내가 듣기로 하고, 그러면서 귀측 발언에서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향적(前向的)인 안을 내놨지만, 신뢰조성 안을 내놓으면서도 귀측 안이 대부분 합의서 무슨 원칙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하면서 대체적으로 신뢰호상문제, 신뢰조성문제를 우선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신뢰조성문제... 이 원래 신뢰라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닙니다.

서로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도 말했지만 말로는 신뢰조성이요 하면서, 그것을 구실로 해서 그 누구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압력을 계속 가하려고 시도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신뢰조성이요 하면서 근본문제해결은 회피하고 있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뢰조성이요 하면서 실현되지도 못한 다른 나라 군축을 실례로 들면서 신뢰우선론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축사(軍縮史)가 시작된 이래 여러번 제가 말했지만 성공한 군축이란 없습니다.

앞에다가 신뢰를 크게 강조했지만 그 신뢰가 이룩된 실례도 없어요.

신뢰를 조성하자고 하면서도 우리가 호상 회담하고 나서 헤어져서는 신뢰와 어긋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직접 남북합의서에 서명한 당사자들이 이북 평양시를 비롯한 이런

명예시장들한테 위촉장을 발급하면서 미수복지대를, 말하자면 되찾기 위해서 리산(離散)의 한과 고통을 풀기 위한 데서 구심점이 되어달라고 내놓고, 말하자면 당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뢰가 조성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신뢰조성문제를 똑바로 새겨야 됩니다.

신뢰란 과연 무엇인가…

또 북남합의서에는 군사적 문제에서 신뢰조성 우선론을 우리가 합의한 것이 없습니다.

신뢰조성과 군축을 동시에 병진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 문구를 한번 새겨보시요.

북남합의서 14조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북남합의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우리 부속합의서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많은 것이 부당하다고 이제 남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속합의서는 철저히, 북남합의서에 철저히 기초하고 거기에 충실합니다.

불가침을 리행하기 위한 모든 대책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합의하기 좋고 토론하기 좋습니다. 사실상 크게 시비할 것이 없습니다.

공정성도 보장했습니다. 어느 일방에 의무를 지우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합의서에 그 무슨 선언적이고… 말하자면 지침적이라는 데 대

해서 오늘도 강조했습니다.

우선 ‘선언’이라는 개념부터 똑바로 알 필요가 있다—

소요문제에 대한 견해와 입장, 해당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과 방도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속합의서는 단순히 그 어떤 선언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대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이라고 해서 또 그 자체가 아무런 구속력(拘束力)도 없는 건 아닙니다.

집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성격이, 문건이 ‘선언’이 아닙니다.

그 무슨 실천의지를 놓고 선언적이요, 뭐요 하는데 그건 사실 상식결여의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 합의서의 매 조항을 따져보시요.

그 무슨 선언적인 게 없습니다.

분계선일대(分界線一帶)에 무력을 서로 증강하지 말자. 이 실천대책이 아닙니까?

서로 정찰행동을 하지 말자. 실천적인 대책이 아닙니까?

서로 제3국의 무력행위에 가담하지 말자. 실천적인 것이 아닙니까? 정확히 실천적인 조항입니다.

귀측 부속합의서에 대한 견해는 부속합의서의 토의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현실성, 실천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현실성이라는 게 뭐이겠습니까?

남북의 호상 군사적 대결상태가 침예하다는 그 현실은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예한 현실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부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현실성을 그저 빈말로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측 위원장 집 앞에 불발탄(不發彈)이 당장 터질게 하나 있는데 그게 터질 것 뻔히 알면서 집에 부인 두고 위험하고, 아이들 죄다 위험하다 해서 그저 들레에 무슨 울타리나 쳐놓고 피해다니소- 하겠소?

그렇겐 못하지요.

아마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자기 아이를 위해서 어느 때 터질지 모를 불발탄이라면 그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라도 그것부터 제거할 겁니다.

우린 현실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문제를 다그쳐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 회담장 밖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대답을 듣고싶다 했습니다.

이러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 불가침하고 사실상 인연이 없다, 남북이 합의한 합의서하고도 사실 인연이 없다, 이런 시점에서 진짜 귀측이 불가침을 리행하자고 하는가, 안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석연한 대답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남(박용옥) : 수고했습니다. 김위원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또 큰 질문도 하나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죠.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은 앞으로 서로 삼갑시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앞으로 9월 1일까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소?

그런데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비평하는건 그건 좋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과격하게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토의과정에서 가능합니다.

그 비판의 방법이... 그런데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부속합의서를, “병신부속합의서”라느니... 이거 정중한 표현
아닙니다.

또 “미국의 요구에 순종한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서로가 지금
마주앉아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이런 표현을 씁니까?

우리가 ‘자주성’이 뭐고, ‘외세의존적’이란 말을 명확히 좀 우리가 이
해를 해야 돼요.

이런 예의에 어긋나는, 또 서로 존중한다는 기본합의에도 어긋나는
이런 표현은 삼가 주시기를 거듭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측 견해를 얘기하면서 지금 김위원장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의서를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우리 당국자는 물론이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우리 국민들도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합의서가 이행되느냐...

그러며는 지금 귀측에서 얘기하는 무슨 ‘핵소동’이니, 군사훈련 T/S
니, 포커스렌즈니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핵소동— 누가 벌였습니까?

지난번 5차 군사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또 핵통제공동위원회 6차회의
에서, 또 군사분과위원회에서도 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귀측의 핵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강조한 것이 남북간에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준수되어야 된다… (이거) 기본원칙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각 분과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했는데 핵소동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는… 두번째로 우리가 밝힌 IAEA사찰—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비핵화공동선언에서 남북 상호 핵사찰 합의를 했습니
다.

이거 반드시 실시돼야 된다… 우리 두번째 점이었고, 그리고 남북의
핵문제해결과 남북간에 관계, 남북대화의 관계— 분명히 얘기했어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라는
얘기는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해결되며는 더 잘 될텐데… 그런 기대감이
충만해 있는데 이것이 해결 안되며는 진전이 이게 어렵게 되지 않
느냐— 우려감을 표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지난 번 우리 정치분과위원장도 이것이 전제조건이 아

니다 라는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핵문제 해결의 심각성을 우린 분명히 얘기한 것이고, 또 그때 얘기할 때 물론 네번째로 우리는 이 노부모방문단(老父母訪問團) 사업과는 다른 어떤 문제하고도 연계될 수 없다 라는 우리 기본입장을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 합의사항은 합의사항대로 실천하자는 것이 우리의 의무(義務)이다...

지난 번 김위원장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7차 고위급회담때 각 합의서를 서명·발효시키면서 마지막에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문을 공동발표 했어요.

그 일곱가지 사항중에서 다른 건 다 이미 완료됐거나 진행중에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달지 않고 하기로 했던 지금 노부모방문단사업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합의된 건 합의대로 하자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또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문제에 대해서 귀측은 우리가 '소동' 벌인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IAEA의 사찰결과에 따라서 의혹(疑惑)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IAEA의 사무총장 『한스 블릭스』도 마찬가지로였지만 남북상호사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촉구를 했고, CSC 유럽의 정상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 문제에 관련있는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그 당국에 의해서는 이 남북상호사찰 해서 빨리 이것을 갖다 해소시켜야 된다...

진정으로 핵문제가 해결되려면 남북상호사찰에서 어떠한 사찰대상의 성역(聖域)도 있어서는 안된다... 기본입니다.

그래야 '의혹'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거부와, 이거에 대한 부인과... 이것이 지금의 핵문제 논쟁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 - 지금 핵소동을 어디서 벌이고 있다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느냐...

이러한 핵문제해결이 남북간에 불신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이런 의혹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귀측에서 핵문제를 어떻게... 지금 실제 개발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돼있다, 의혹이 있다, 그러며는 IAEA의 사찰이 하나의 수단이고, 그 다음에 남북상호사찰이 하나의 수단이고...

이러한 제도적인 조치가 다 이루어지게 되며는 이것이 남북대화관계에도 큰 축진의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나의 기대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이것이 잘 안될 때에는 어떤 좀 진척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우려감을 갖다가 귀측에서 유념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연시킨다, 팀스피리트다, 또 포커스렌즈다...

우리가 다른 얘기하기 전에 우린 군인입니다.

군사분과위원회 군인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 군축문제라든가, 군사회담하는데 다른 나라의 훈

련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훈련의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조정한다든가, 또는 저것이 오해의 위험이 있으니까 서로 참관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를 논의했으면 논의했지— 하나의 자위적 수단으로 하고 있는 정상적인 훈련활동을 군인이 군인한테 그걸 중지(中止)하라고 요구하는 군인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훈련(訓練)이라는 거 당연한거 아니요?

하나의 자위수단으로서, 방어수단으로서 당연한거 아니요?

그저를 어떻게 중지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걸 어떻게 또 남북대화의 지연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는 몰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군인끼리 마주 앉아서, 군인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훈련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견 가당치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최소한도 군인의 기본상식으로 알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핵... 이러한 그 문제 뿐만 아니라 부속합의서 토의지연을...

우리 부속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뭐 국제법, 유엔헌장... 이것을 우리가 여기다 고려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모든 국제법보다 우선시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분명히 좀 인식을 같이 합시다.

귀측이나 우리나라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미 국제무대에 나섰습니다. 유엔회원국의 일원들입니다.

유엔회원국이 유엔헌장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명한 이치다 이거죠.

또 남북기본합의서- 귀측도 얘기하다시피 지금 국가와 국가간에 협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이러한 이 남북기본합의서가 우리가 앞으로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다 그런 방책으로 하고 있지마는.

우리가 엄연히 국제사회의 법적 주체로서 국제기구와 맺은 조약이라든가 다른나라와 제3국들과 맺은 조약들이 어떻게 기본합의서가 그보다 우위(優位)에 있다- 이래 가지고 기존의 맺은 모든 조약, 협정들을 갖다가 무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귀측이나 우리측이나 국제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있는 우리의 위치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다음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속합의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조항별로 토의해 나갈 때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최소한도 앞으로 우리가 군사분과위원회를 하고 부속합의서를 논의하는 가운데 있어서 무슨 외세의존적이니, 무슨 미국에 순종하니... 이런 말씀, 이런 표현- 이거는

삼가셔야 됩니다.

왜냐? 내 지난 번 언제 한번 군사분과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첫째 최근의 귀측의 대외적인 발언내용이 제3국에 하는 내용과 우리 군사분과회담과 남북간에 하는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주성(自主性)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국가목표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달성수단을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자주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외교적 측면, 군사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 어디가 어때서 지금 귀측이 말끝마다 “외세의존적이다” 하는 것을 이런 본질적인 부속합의서를 토의하는 마당에서 자꾸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것이 부속합의서를 지금 토의하겠다는 귀측의 자세냐?

이러면서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우리 부속합의서 논의를 갖다 지금 하자는 거냐?

본질적인 토의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문제토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조발언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입장, 이거 바뀐 겁니까?

부속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가 포괄적 단일 부속합의서야 된다고 단정적으로, 첫째 조항으로 얘기 했는데... 이거 입장 바뀐 겁니까?

분명히 김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부속합의서에는 철저히 이해될 수 있는 대책들이 일관(一貫)돼야 됩니다.

귀측 안과 우리측 안을 비교해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는 대책안이 어디에 더 들어가 있고, 어디에 덜 들어가 있느냐?

대책안들을 포함하는 범위가 어느 것이 더 넓으냐?

우리측 안을— 우리가 처음에 이 부속합의서의 명칭을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에 관한 합의서”라고 그랬더니 우리의 내용을 지금 “우발적 무력충돌 합의서”라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기계적 조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귀측 안과 우리측 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할 때 각 조항별 내용에 있어서 어느쪽 안이 더 많은 내용을, 더 실질적인 내용을, 더 의미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조항별 논의에서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의 전반적인 자세문제를 갖다가 얘길 하셨는데…

내 한가지 얘기 나온김에 오늘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안하려 했는데 지금 귀측에서 이런 식으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轉嫁)하려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지난 6월 30일 우리가 평양방송의 보도를 들었어요. 군사위원회 결정사항…

이런거 지금 부속합의서를 논의하고, 8차 고위급회담까지는 다 합의 해서 서명·발효시켜 그야말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여건 조성의 길을

트자고 하는 이 마당에서 이러한 거는 진짜 대화에 부정적인 요소이고, 정면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기본합의서 1조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4조에도 위반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거 그만 두어야 됩니다.

또 얘기할 것이 많지만, 이제 김위원장의 얘기에 대한 답변을 겸해서 귀측 안에 대한 평가는 대략 이 정도만 하겠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끝이 없을테고... 오늘 부속합의서의 명칭, 장편성,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체토의라도 한번 끝내야 다음에 '위원장접촉'을 하든, '위원접촉'을 하든 우리가 좀 속도를 낼 수 있을 테니까 그만 토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또 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본토의 같은 거는 그 정도로 충분히 자기의 견해는 교환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부속합의서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려면 아까 우리가 이름도 못 정했다, 제목도 못 정하고, 장도 못 정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느 누구 일방의 책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북(김영철) : 기본 부속합의서 장, 절, 내용 토론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다만 제가 몇가지 그저 생각되는 거는 이제 남측위원장이 좀 좋은 소릴 할 줄 알았는데...

남(박용옥) : 음, 음...

북(김영철) : 좀 생각되는게 있습니다.

다만 뭐인가, 그 남측 부속합의서를 우리가 ‘병신부속합의서’라고 해서 상당히 그... 한 건데, 우리는 그 합의서 내용이 갖춤세를 다 갖추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채준석) : 그런 것을 다 기초발언문에까지 넣고 말이죠...

북(김영철) : 가만, 가만 있으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가만 있으라우.

남(채준석) : 그건 상대측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북(김영철) : 가만 있으라, 가만 있으라, 왜 마지막에 와서...

위원장과 바뀌었지.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속합의서가 원만한 체모(體貌)를 갖춘다면 그런 얘기가 더 나서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자주성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신경을 쓰는데...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자주적인 립장에서 자주 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인 대화를 하고, 문제처리에서 자주적인 립장에서 남이 하라는대로 안하면 됩니다.

그거 크게 신경쓸 거 없습니다.

(귀측이)부속합의서를 철저히 리행하려는 립장이라 하기 때문에 내 거기서 마지막에 한마디 얘기하고...

에- 군대가 하는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비하는게 아닙니다.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인가 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미 귀측에서 벌이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대화의 일방인 우리를 반대하는 공격적인 전쟁연습(戰爭演習)으로 단정한지 오

랩니다.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공격적인 전쟁연습이고, 침략적인 전쟁연습이고, 핵전쟁연습이라는 건 제가 구태여 더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을지 포커스렌즈』훈련에 대해서 말한다면, ‘포커스렌즈’훈련은 원래 ‘을지’하고 같이 했는데 공개하지 않다가 금년도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라는 듯이...

(귀측은)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한다”- 우리가 훈련 일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일방을 자극하는, 대화일방을 목표로 삼은 이런 훈련을 하지 말라- 이게요!

그럼 오늘 (우리가)남측위원장 말을 어떻게 새겨야 되겠습니까?

그런 훈련은 계속하겠다는 소리나 같은데...

또 이제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저히 리행하겠다는 리행하겠다는 건 우린 압니다.

귀측의 리동복(李東馥)대표가 얘기했어요.

이어서 통일원차관 림동원(林東源)대표도 얘기했다구요.

그런데 뭐인가? 앞에서는 철저히 리행하겠다고 하고서... 첫째, 둘째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분명히 “무엇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진전(進展)이 없다”고 림장 표명을 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림장표명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림장상 우리가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핵문제가 진전이 없으면 모든 것이 말하자면, 리행 안한다— 이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중히 충고하건대, 정중히 충고하건대 그 핵문제를 가지고, 의심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하지 말라”—이겁니다.

이거 상호사찰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상호사찰 반대하는게 아니요. 하자는 기야—!

우린 여기 와 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남측에 가서 보겠다는 겁니다.

뭘 보겠는가? 미국의 핵무기·핵기지를 보겠다는 게요.

특히 12월 18일날에 귀측의 로태우(盧泰愚)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다 나갔다—

이번에 부시대통령이 7월 2일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다 나갔는가 빈자리를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하는게 아니에요.

(상호사찰문제가) 왜 진척이 안되는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핵문제를 내가 관여했던 말입니다.

우선 비핵화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합의서를 남측에서 가지고 만나왔단 말이요.

사찰규정에 미국의 핵무기·핵기지를 인위적으로 뺐어요.

사찰할 대상에 북의 일반기지(一般基地)를 사찰하겠다고 터무니 없이 주장하고 있어요.

사찰규정에도 없는, 합의서에도 없는 강제사찰(強制査察)을 주장하고

있단 말예요.

이래서 문제가(문제의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우린 상호사찰(相互査察) 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립장상 변경을 표명하려면 정확히 하라-!

특히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소.

통일원차관이 얘기했소.

모순된다 말이야. 앞에서는 하겠소, 셋째는 이렇다-

자가당착(自家撞着)적인 립장표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포커스렌즈 훈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을지훈련에 대해 말하는데... 분명히 말합니다.

남(이영호) : 말씀하는 중간에 제가...

북(김영철) : 어-이, 가만 있어!

팀스피리트만 한다면, 우리를 반대하는 공격적인 전쟁연습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지 마시요.

내가 명백히 합니다.

우리 군사분과위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진행되지 못하면 정치가 무엇을 합의했든, 협력교류가 무엇을 합의했든 안돼요!

이건 김영철이의 혼잣말이 아니요! 이건 우리 대표단의 립장이요!

우리 대표단의 립장은 우리 평양(平壤)의 목소립니다.

이거는 혼동하지 말자!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귀측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서 대하는게 좋습니다.

팀스피리트를 계속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핵문제 관련립장은 어떻게 취하겠느냐—

이거 립장상 표명을 잘 해야 됩니다.

나는 이 회담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 귀측에 정중히 말씀드리 는 겁니다.

나는 이런 긍정적인 표명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불가침을 리행하겠다고 이제 박위원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을 두고 합의서 토의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1장부터 들어갑시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오늘 들어가자 하는가 하니까 제목부터 비슷이 맞춰나가야 할 것 같은데, 총적인 제목부터 합의서 토의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제 국제 무슨 헌법규정... 유엔 헌장 관련문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유엔헌장 규정을 놓고 보시요. 유엔헌장 33조, 1장 몇조 몇조...

어떻게 돼있는가? 유엔헌장이 나라 내용, 사정... 이거 하는데 규정이 작용 안하게 돼있다고요.

그런데 합의서 조항별 토의에서 논의할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만 두 겠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합의서 토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남(박용옥) : 토의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준비된게 뭐냐면, 편의상 북측 안하고 남측 안하고 이렇게... 우리가 토의의 편의상 비교공란(比較空

欄)을 해두었으니까 같이 봅시다.

북(김영철) : 예, 감사합니다.

남(박용옥) : 지금 들어가기 전에 우리도 이 훈련문제, 핵문제, T/S문제 얘기를 했고 또 김위원장 아까 얘기했어요. 명확히 양측의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훈련 문제라든가 핵문제, 이런 것도 아까 내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장도 여기에 지금 확고합니다.

또 귀측의 입장도 이제 잘 들었습니다.

그 상태로 해두고 토의에 들어갑시다.

오늘 이 토의에서 인제 김위원장께서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셨다고 보는데 명칭을 한번 봅시다. 자, 명칭...

김위원장께서 우선 명칭부터 하자 그러니까, 아까 제목도 하나 못내놨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좋습니다. 제목이라도 뭘하나 하도록 합시다.

우리측 제목은 요번에 우리가 수정안으로 가지고 나온 제목입니다. “남북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본래 우리는 지금 기본합의서 외에 하는 건 다 부속합의서 아니냐? 그래서 공동위원회 할 때도 그냥 합의서, 합의서 - 부속합의서라는 것을 별도로 쓰지 않을 것이...

부속합의서는 하나의 일반명칭으로 생각해서 기본합의서 외에 하는 합의서는 다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다 -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귀측이 또 계속 ‘부속합의서’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부속합의서를 받았어요.

귀측의 명칭을 보면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 제2장 불가침의 리행과 준수 및 담보를 위한 부속합의서”- 상당히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전문(前文)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나간 것 같애요. 제목이...

제목이 전문에 있는 내용 다 같애요.

그래서 내 견해는 우리가 합의한 대로 하자.

그러며는 “군사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거기서 꼭 불가침에 관한 이행·준수... 이 문제니까 그대로 ‘이행·준수’란 말을 쓰고...

(귀측 안을 보면) ‘담보’란 말을 여기다 넣었는데, 지금 우리 합의서에 ‘담보’가 되는 문제가 내용으로 하나라도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위원회(共同委員會)에서 해야 돼요. 이행과 보장기구로서...

그래서 ‘담보’라는 말을 여기에 우리는 넣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기본은 합의된 대로 하자.

그리고 부속합의서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속합의서의 해야 될 일이 이것은 지금 ‘담보’- 이 문제 내용을 갖다 집어넣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측이 해온 “남북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라는 이름을 내놓는데... 어떻습니까?

북(김영철) : 제목이 상당한 정도로 접근됐습니다.

우리 제목이 긴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는 명백히 하기 위해서, 어떤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담보를 위한 부속합의서나 하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한 즉, 우리 부속합의서 제목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불가침’- 이거는 우리가 북남 쌍방사이에 합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된 데 따라서, 합의된 데에 따라서 그 제목을 명기(明記)한 것입니다.

그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담보를 위한 부속합의서...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면 “담보를-” 이 한 단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건상 표기에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 제2장 불가침의”-이건 그대로 표기할 걸 주장합니다.

“리행과 준수 및 담보를 위한 부속합의서”... ‘담보’란 불가침부분에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불가침부분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내오기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조 2항에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제목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박용옥) : 이것은 일단 ‘담보’는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돼요.

왜냐? 이 부속합의서는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들어가는 것이지, ‘담보’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담보’는 뭐냐?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하는 담보는 신뢰구축, 군축, 검

증... 이런 것들이 담보조치예요. 보장조치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들어갈 사항이 아니죠.

그건 군사공동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 봤으니깐 거기에서 그것을, 그 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합의를 해야지, 그건 이 부속합의서에서 논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담보’ 들어가는 것이 이견 이치(理致)에 맞질 않는다, 그런 뜻이죠

북(김영철) : 예, 그렇게 새기는데... ‘담보’란 문제를 어떻게 새기려고 하니까 (남측이) 군축, 신뢰조성을 불가침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데서 우리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불가침’- 하면 불가침을 근원적으로 리행하고 준수하는 문제가 뭐인가? 그것을 담보하는 군축과 이 신뢰조성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불가침을 근원적으로 보장하자면, 불가침을 근원적으로 리행하자면 반드시 군축문제가 실현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담보문제를 영는 것이지, 여기에 다른 무슨 못마땅한 색깔이 있는 건 없습니다.

남(박용옥) : 아 김위원장, 그 얘기를 알겠는데...

북(김영철) : 그런데 내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속합의서에 불가침 리행기구가 무엇이나- 그것을 ‘군사공동위원회’라고 우리가 밝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침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준수 및 담보를 위한”-이렇게 영은 겹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의의가 없습니다.

그걸 영어도 우리가 무슨 크게 귀측에 불편한 게 없겠는데...

우리는 “불가침문제”하면 단순히 지금 당장 침략하지 않는다, 공격하지 않는다— 이것만 념두(念頭)에 두는게 아니다.

불가침을 근원적으로 담보하는 게 무엇이냐?

침략을 할 수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무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담보’란 말이 들어가도 불가침과 결코 모순(矛盾)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원리적으로 리치에 맞는 것입니다.

남(박용옥) : 김위원장 얘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합시다.

지금 귀측이 오늘 부속합의서의 성격에 대해서 또 포괄적인 단일 부속합의서다— 라고 여기 나온 것이 아마 이런 배경(背景)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안했죠.

7차 고위급회담에서도 그렇게 합의 안했고, 바로 지난번 5차 군사분과위에서도 그렇게 안했죠.

9월 1일까지 하나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한다, 그리고 양측 협의에 따라서 부속합의서는 계속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불가침분야에 관한 부속합의서의 성격 규정이었습니다.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대신 9월 1일까지는 하나로 한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부속합의서는 귀측 안에서도 무슨 군축조항이 들어간 거 없어요.

검증(檢證)조항...? 들어간 거 없어요.

이 ‘담보’라는 내용이 들어가려면, 이 부속합의서 내용에 우리가 얘기하는 보장, 보장조치가 바로— 지금 김위원장 잘 말씀하셨습니다.

신뢰구축, 군축, 검증… 이것들이 결국 불가침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 보장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 하면서 그 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로 할 수 있어요.

이 부속합의서에서는 이 ‘보장’이라든가, ‘담보’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또 그것이 이 부속합의서의 성격에도 맞는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 우린 넣을 수 없다는 거고…

북(김영철) : 그러면 북남합의서의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제2장 부분의 “북남불가침”— 이것은 동의합니까?

남(박용옥) : 만일 그것을 구태여 길게… 우리는 그것이 밑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는데 구태여 그것을 좀 길지만, 반복해서라도 좀 넣고 싶다— 그럼 그건 그럴 용의가 있어요.

북(김영철) : 그럼 그대로 넣는 걸로 합시다. 그걸 합의를 보고…

그대로 넣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담보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담보문제는 제가 조금 고려하겠습니다.

남(박용옥) : 그거는, 그 문제는 그러면 ‘고려’를 하지 말고 아예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북남사이의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뭐 제목도 또

못하고 나갔다고 또 이제 말할테니, “제2장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이렇게 합시다.

뭐 제목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나가자고.

북(김영철) : “불가침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아, ‘담보’- 요건 좀 고려해 보고...

남(박용옥) : 고건 빼고.

북(김영철) : 고려해 보고. 서문 또 들어갑시다.

남(채준석) : 그럼 우리 2장 들어가는 것, 우리 2장- 그 넣는 것도 해 보자구요.

북(김영철) : (노기를 띠며) 오늘 회의는 남측위원장이 해!

옆파리서 자꾸 복잡하게... 회의집중 안되게...

남(박용옥) : 그래, 저...

북(김영철) : 쌍방 위원동무들! 위원선생들! 이 질서를 지킵시다.

우리 위원장들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때는 제발 옆파리에서 좀 애기하지 마시라구요.

(우리측 채준석위원을 향해)자꾸 그러지 말아요. 거 상당히 성격이 급합니다? 저 원 끝에 앉은 선생이 말입니다.

남(박용옥) : 필요하면, 필요하면... 다 각자 지명해서 할 수 있으니까.

북(김영철) : 오늘 사회는 남측위원장이 하오.

발언권 얻고 하란 말이에요.

남(박용우) : 자, 그러며는 이것은... (북측이) ‘담보’를 댄다 하면 (우리측이)이 제목을 다 받고... 담보를 빼며는.

이 ‘담보’라는 내용이 들어가려면, 이 부속합의서 내용에 우리가 얘기하는 보장, 보장조치가 바로— 지금 김위원장 잘 말씀하셨습니다.

신뢰구축, 군축, 검증… 이것들이 결국 불가침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 보장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 하면서 그 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로 할 수 있어요.

이 부속합의서에서는 이 ‘보장’이라든가, ‘담보’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또 그것이 이 부속합의서의 성격에도 맞는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 우린 넣을 수 없다는 거고…

북(김영철) : 그러면 북남합의서의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제2장 부분의 “북남불가침”— 이것은 동의합니까?

남(박용옥) : 만일 그것을 구태여 길게… 우리는 그것이 밑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는데 구태여 그것을 좀 길지만, 반복해서라도 좀 넣고 싶다— 그럼 그건 그럴 용의가 있어요.

북(김영철) : 그럼 그대로 넣는 걸로 합시다. 그걸 합의를 보고…

그대로 넣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담보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담보문제는 제가 조금 고려하겠습니다.

남(박용옥) : 그거는, 그 문제는 그러면 ‘고려’를 하지 말고 아예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북남사이의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뭐 제목도 또

못하고 나갔다고 또 이제 말할테니, “제2장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이렇게 합시다.

뭐 제목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나가자고.

북(김영철) : “불가침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아, ‘담보’- 요건 좀 고려해 보고...

남(박용옥) : 고건 빼고.

북(김영철) : 고려해 보고. 서문 또 들어갑시다.

남(채준석) : 그럼 우리 2장 들어가는 것, 우리 2장- 그 넣는 것도 해 보자구요.

북(김영철) : (노기를 띠며) 오늘 회의는 남측위원장이 해!

옆파리서 자꾸 복잡하게... 회의집중 안되게...

남(박용옥) : 그래, 저...

북(김영철) : 쌍방 위원동무들! 위원선생들! 이 질서를 지킵시다.

우리 위원장들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때는 제발 옆파리에서 좀 애기하지 마시라구요.

(우리측 채준석위원을 향해)자꾸 그러지 말아요. 거 상당히 성격이 급합니다? 저 원 끝에 앉은 선생이 말입니다.

남(박용옥) : 필요하면, 필요하면... 다 각자 지명해서 할 수 있으니까.

북(김영철) : 오늘 사회는 남측위원장이 하오.

발언권 얻고 하란 말이에요.

남(박용우) : 자, 그러며는 이것은... (북측이) ‘담보’를 댈다 하면 (우리측이)이 제목을 다 받고... 담보를 빼며는.

이것 ‘고려’하겠다면... 그것도 고려! 보류! -이거죠.

북(김영철) : 우리 군대는 저... 장사꾼이 아니지 뭐. (웃음)

남(박용옥) : 나도 장사할 줄은 잘 모르지만, 자- 보류

자, 전문-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2장에 규정한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게 우리 합의한 내용 그대로거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북측은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북남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담보,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지금 여기에도 담보문제가 똑같고...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우리가 지금 협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합의한대로”- 이러면 다 앞으로 할 수가 있죠. 이 우리가 하는, 9월 1일까지 하는 단일합의서에는 그런 걸 다 빼라...

북(김영철) : 길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전문에서 차이나는 것은 이제 ‘담보’ 하나 차이가 있고...

남(박용옥) : 담보? 담보는 군사적 대결상태 부분에...

북(김영철) : 그 다음에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우리는 대책을 협의하고, 그 “협의한데 따라”를 “협의하고”- 이렇게 합시다.

남(박용옥) : 아, 우리측 안에서? 그걸 협의한데 따라서...?

북(김영철) : 예. “협 의한 데 따라”한 거—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협의하고”— 이렇게 고칩시다.

왜그런가 하니까 “합의하고서,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잔 말이에요. 따라 하는게 아니라.

남(박용옥) : ...이행·준수를 협의하고? 이게 사실 우리 분과위 구성 제2조에는 “협 의한 데 따라”—이렇게 돼있지.

북(김영철) : 그런데 요걸 가지구 자꾸 무슨 하나 하나...

이렇게 자꾸 하면 리해가 잘못되기 때문에, 협의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이제 담보문제 있잖습니까?

담보문제를 제가 고려합니다.

그리고 위에 전문(前文)을 그대로 표기하는거, 고려한단 말입니다.

남(박용옥) : 응, 응...

북(김영철) : 그러면 제목과 전문이 ‘담보’라는 두 글자를 내놓고는 합의 된 것으로 됩니다. 맞지요?

남(박용옥) : ...내용은 ‘담보’를 빼고, ‘하고’하는 것을 우리가 좀 거...

어때요? 우리 위원 전해들은...

남(임태순) : 이걸 이 전문에는...

남(박용옥) : 우리가 우리 전문에다가 “협 의한 데 따라”를 “협의하고”— 이렇게 하자 이거지.

북(김영철) : 예, 고건 “협의하고”— 그렇게 하지요이?

그런데 거기서 다만 우리는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이 “군사적 대결상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남(박용옥) : 그런데 이것은 내 아까 담보문제와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이 부속합의서 내용에 보장하는 내용이라든가, 기타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 대책을 우리가 논의 안했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합의한대로 하자. 합의한대로— 그 뜻이니까.

그러니까 ‘담보’하고 ‘군사적 대결상태’— 이거 빼자 이거지.

북(김영철) : 귀측에서 내놓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놓은 구체적인 매 장별, 조항별 규제내용은 다 불가침에 관한 내용이면서도 또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게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레하면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벌써 그런 조치를 취하면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도 일 없다고요.

그런데 내 왜 그러는가? 우리 합의서를 보라요. 기본합의서...

기본합의서에 어떻게 되였는가—

남(박용옥) : 아 그건 14조에 나와 있어요. 분과위원회가...

북(김영철) : 그대로, 그대로 하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잉? 보십시오. 14조를 보십시오.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북 남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리행·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요잉?

남(박용옥) : “협의·해결한다” —이렇게 돼있죠?

북(김영철) : 또... 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조 2항을 보

십시요.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 해당 부분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이 해당부분이란 이 임무는 불가침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군사적 대결상태 문제도 거기 다 들어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 영었다 해서 별 문제되는게 없습니다. 그 무슨...

내 물어보지요. 그 여기 영으면 크게 무슨 부담스러운게 있습니까?

남(박용옥) : 아네요. 부담스러운게 있는게 아니라, 우리가 합의한 것이 불가침을 우리가 우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는 어휘(語彙)가 서로가 지금 다르게 해석들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총칙(總則)에다 용어정의도 넣었던 그 뜻이... 쓰는 말을 명확히 하자-

그럼 우리가 부속합의서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것이다-
그래 공동위원회에서는 보장문제, 담보문제를 다룬다-

그럼 저쪽의 ‘담보’는 우리가 (북측이)지금 ‘고려’하기로 했고-

군사적 대결상태- 이것은 여기 ‘불가침’ 이것 외에도, 이거 외에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

북(김영철) : 많지. 많다이.

남(박용옥) : 많으니까... 그것은 기본합의서라든가, 여기엔 아직 다 포함 안된 다른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 그거는 대책이 거의 다 협의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대책을 앞으로 이 기본합의서 각 조항별로 우리가 지금 만들었

않았소? 귀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항별로 우리가 하지 않았소?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됐으니 합의한대로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라고 한건 뭐, “협의하고”-라고 그러는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하면 우리가 오늘 타협할 수 있지 않느냐.

북(김영철) :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건 명백히 얘기합니다.

남(박용옥) : 그러면 일단 말이요, 이 ‘담보’를 유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고’- 하는건 좋아요. 그건 받겠는데...

“군사적 대결상태”- 이것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북(김영철) : 에, 그걸 고려해요.

왜 그러냐면 군사적 대결상태라는 거는...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그 무슨 조항은 없습니다.

이 불가침 전반내용이 리해되면 그것이 곧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으로 됩니다.

남(박용옥) : 그외에도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북(김영철) : 에, 그러기 때문에 그외에도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부족한게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그건 명백히 했습니다.

앞으로 더 토론해서 영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은 무엇인가? 이 합의서가 어떤 합의서냐?

불가침을 리행하고 준수하고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부속

합의서다— 이런거 서문에 박아영는 게 나쁘지 않다.

남(박용옥) : 그러니까 빼려는... 뻔다고 해서 무슨 지금...

북(김영철) : 아, 빼면...? 좀더 좋을 수 있는 것이 값이 떨어진단 말이요.

같은 값이면 좋은 떡을 먹자는 겁니다. 이게...

남(채준석) : 그런데 군사적 대결상태를 그...

북(김영철) : 아 내 애길 들어요, 가만! 가만!

남(채준석) : 아 나도 발언할 수가 있단 말예요!(웃음)

북(김영철) : 아니, 위원장한테 물어보구 해야지.

남(박용옥) :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발언드릴게요.

지금 여기 얘기한대로 “군사적 대결”— 자꾸 지금 하는데...

이 논의는 그만하고 이거 지금 “담보문제” 하고 “대결상태”— 이 문제를 우선 유보(留保)하고 다음에 넘어갑시다.

북(김영철) : 군사적 대결상태 문제를 우리가 정리해 놓으면 담보문제를 우리가 철회하겠습니다.

남(박용옥) : 응? 아, 그러니까... 허허허허...

남(김희상) : 아니, 장사 안한다, 장사 안한다고 그러더니... (웃음)

남(박용옥) : 한가지, 그러면...

북(김영철) : 예.

남(박용옥) : 아까 그 뜻이 뭐요?

북(김영철) : 어느 거?

남(박용옥) : 부속합의서가 포괄적 단일부속합의서야 된다— 그 뜻이 뭐요?

북(김영철) : 아, 그거 내 설명해 줍시다. 그거 리해해야 돼요.

남(박용옥) : 그래 내가 아까 그랬어요.

이거 입장변경(立場變更)이냐? 그랬더니...

북(김영철) : 내가 얘기하지요.

그 상당한 정도로 그 무슨 뭐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인 단일합의서란 무엇이냐?

북남합의서 제2장 불가침 - 불가침은 9조로부터 14조까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14조까지 리행대책이 다 들어간 그런 부속합의서라야 된다 - 그걸 하나 만들자, 군사분과위원회에서...

그러면 여기서 오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만들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첫 생산물(生産物)이지만, 이걸 하나 9조로부터 14조까지 모든 리행대책이 다 담겨진 합의를 하나로 만들자 이겁니다.

그럼 뭐, 우리가 그러면 이거...

남(박용옥) : 9월1일까지 하나 만들자?

북(김영철) : 어 - 하나 만들자.

그럼 이 다음에 가서 무슨... 또 토론될 수 있을까, 이 다음에 또 생각되는 게 있을 수 있다 -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것은 부족하다, 그럼 우리가 또 다시 하나 만들 수 있다 - 이걸 우리가 명백히 했습니다.

우리가 서울회담에서 합의본 것도 그것이지- 결코 이번 우리 군사
분과회의에서는 9조나 10조의 리행대책만 토론하고, 다른 것은...

남(박용옥) : 그런데 그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얘기죠.

북(김영철) : 또 무슨 전반적인걸 우리가 토론한다고 해서 없는걸 갖다
박아영자는 것도 아니다-

이미 합의된 북남기본합의서의 제2장 불가침부분, 명백히 9조로부터
14조- 이 14조에 모든 리행대책이 다 담겨진, 체모를 완전히 갖춘 부
속합의서를 만든다-

왜 그런가 하나까 다른 분과위는 한 조항도 빠짐없이 다 만들었어요.

남(박용옥) : 음

북(김영철) : 정치분과 합의서를 갖다 연구해 보십시오.

남(박용옥) : 군사분과위는 좀 다릅지.

북(김영철) : 우리 군사분과위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럼, 군사분과위는 기본합의서를 보는 눈이 다른가? 같은
합의서인데...

어째서 군사분과위원회는 같은 북남합의서를 보는데서 정치나 협력
하고 다른가?

남(박용옥) : 아, 그건 합의서에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래요. 기본합의서에...

북(김영철) :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해야 토론하기도 좋다.

장별(章別)로 쪼옥 내려가시기 좋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가 제기하
는 겁니다.

남(박용옥) : 오케이, 이제 취지를 우리가 잘 들었으니까...

이 담보문제와 군사적 대결상태문제 - 일단 많이 얘기를 나눴으니까...

북(김영철) : 어 이제, 얘기 나누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 얘기하자면 저리 낙착(落着)시킵시다.

담보문제가 정 - 그 말하자면 뭐하면, 우리가 “군사적 대결상태”라는 말을 열고, “담보문제”란 말은 우리가 그걸 철회하겠단니까...

저리 누릅시다. 큰 문제가 아네요. 이게...

* 저리 = 예견성 있게 미리. 처음부터 아예.

남(박용옥) : 채위원,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때요?

남(채준석) : 아까 우리보고 ‘홍정’한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홍정하고 말이죠.

북(김영철) : 난 이럴 때는 홍정인게 아니라 원칙적인 립장이죠. 원칙적인 립장...

남(박용옥) : 자, 채위원이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남(채준석) : 그런데 이 군사적 대결을...

북(김영철) : 고개를 좀 들읍시다.

남(채준석) : 이걸 넣으려는 말이죠.

북(김영철) : 예 -

남(채준석) : 전체적인 포괄적인 단일부속합의서가 형식(形式)이 돼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가 부속합의서를 또 생산해낸다는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군사적 대결상태”를 빼고, 이 조항에 있는데

로 했으면 그게 좋을 거 같습니다.

북(김영철) : 예, 그 저...

남(박용옥) : 그러면 이걸 다하고 나서 분명히 또 한가지 짚어줄 것은 군사분과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계속 문제를... 이제 발굴해야죠.

북(김영철) : 발굴해 토론할 수 있어. 그럼!

남(박용옥) : 발굴해서 토론하고, 또 부속합의서 또 만들고...

북(김영철)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거는 다하자 이게지.

“대결상태”를 영었다고 해서 이 다음에 할 것 못하면 안된다 이거야.

남(채준석) : 아니, 그런데 북측에서 얘기하는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해결이 안되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이런 문제도 또 여러가지 있고...

북(김영철) : 아니, 그런 문제를 아직...

남(채준석) : 그런 문제까지 다 포괄되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북(김영철) : 아직 거론하지도 않아요.

우리 군사적 대결상태, 주한미군문제도 난 아직 얘기한 적이 없소!

남(채준석) :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평상 얘기할 때 이것이 포함돼 있으니까...

북(김영철) : 거 지나치게 얘기하지 마시요.

남(채준석) : 이 문제는 여기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박용옥) :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이제 앞으로 다 나오게 되지만, 이

전부가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북(김영철) : 그렇지요!

남(박용옥) : 그러면 이제 구체적 대책 - 그럼 이거 말고도 또 이제 다른 구체적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가 폭이 좀 넓거든?

그래서, 그 폭이 넓은 개념을 넣어가지고 또 구체적 대책을 협의했다 - 이런 지금 “구체적 대책을 협의했다”는 말이 지금 여기에 잘못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을 합시다.

오늘 어떻게 12시인데, 식사를 하고 와서 다시 만날까요?

북(김영철) : 아니, 요거 계속해서 토론하자요.

남(박용옥) : 아니, 우리 뭐 점심도 안고 그냥 계속...?

북(김영철) : 아니, 토론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 우리가 뭘 하나도 못했는데...

남(박용옥) : 오늘 김위원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면... 좋아요!

북(김영철) : 그래서... 이걸 고려(考慮)가 없고, 저리 타결합시다.

남(박용옥) : 그런데 지금...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갖다가 지금 협의를 했느냐?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들, 이영호(李榮浩)위원이 한번...

남(이영호)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간에 합의된 기본합의서는 제14조에 분명하게 “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대책과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합의서에 합의된대로 충실하게 해야 된다, 부속합의서 작성하는데...

이거를 귀측도 두번째 원칙으로다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부속합의서에 충실하게 한다고 그러면 - 부속합의서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기 때문에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대책은 이견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따라서 전문에는 이번 우리가 작성하는 부속합의서가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것이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담보문제”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는 이견 추가적으로 나중에 작성하는 부속합의서에 명기하면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나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에 한정돼야만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된 그러한 주문에 아주 충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슨 다른 오해가 나중에 생기게 되면, 나중에 또 이 합의를 만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서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된대로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박용옥) : 자, 됐어요.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안을 제시하겠는데 ‘담보’ 빼고, 아까 김위원장이 얘기한대로 우리측 안에다가,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이 걸로 결말짓지?

북(김영철) : “군사적 대결상태”는 영고?

남(박용옥) : 그런 건 빼고, 그건 빼고, 우리측 안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북(김영철) : 그거 저 “군사적 대결상태”를 밑에는 서문에 영고- 그 영었다고 해서... 이제 리영호 대령이 마치도 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문제는 따로 있고, 무슨 저 불가침을 리행하기 위한, 준수를 위한 거 따로 있고...

남(박용옥) : 아니, 부속합의서도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 나왔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많이 있다 이거지.

북(김영철) : 예, 예... 그 많은데, 그 많은 걸 발굴해야 이 안의 것도 더욱... 이런 중복,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백히 말씀드릴건 뭐인가?

군사적 리행대책- 군사적 대결상태의 리행대책이 따로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리행대책이라는 문제를 정확히 리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까, 이제 14조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걸 표기해 영는게 나쁘지 않아요.(나쁠것 없음)

14조에도 우리 군사분과위원회에서 불가침에 관한 리행·준수 문제도 토론했다, 대결상태 해소문제도 토론했다 이거요.

우리 대결상태 해소문제도 토론하지 않았소?

그래 이런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니까 여기 영자!

남(박용옥) : 가만있어, 여기 임위원(任委員)이 간단히 한번...

남(임태순) :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는데, 지금 “군사적 대결상태”나 “담보문제”같은 것 - 이런 것을 전부 놓자고 하는 얘기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포괄적 단일합의서를 우리가 만드는 장면이라면 이걸 뭐 전부 모든 것을, 무엇 더 빠진게 또 없겠나 해서 전부 집어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속합의서 이것만 가지고 지금 남북간의 군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열쇠를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행과 준수문제를 가지고 부속합의서를 만든다고 명문화해 가지고, 지금 그 합의서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그동안의 합의내용을 볼 때 사실 분과위원회가 해야 할 일로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도 대책을 협의한다” -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지금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느냐 하면 협의한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대책을 협의했다면 이제 앞으로 더 논의할게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에다 넣기는 그렇고, 또 군사공동위원회를 그 기능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합의하기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실천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서 만들어 줘야지, 이제 말하자면 공동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건데... 결국 군사적 대결상

태가 이 부속합의서 속에 다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낮이 간지럽지 않느냐...

남(박용옥) : 그런데 그건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남(임태순) :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을 명문화(明文化)해서 여기다 집어 넣는 것은 유보하는게 좋겠다...

남(박용옥) : 내가 얘기할게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군사적 대결상태”- 여기다 “합의하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합의했다는 것이 무슨 완결(完結)됐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준수를 위한 우리측 전문에서 합의의 이행과 준수, 준수... 그다음에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협의한데 따라...

북(김영철) : 예, 접근합니다.

남(박용옥) : “따라...” 하며는 그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협의(協議)한데 따라서 합의(合意)한 결과(結果)가 이거다-

북(김영철) :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남(박용옥) : 그렇게는 이제 나올 수가 있겠지.

북(김영철) : 자, 옹습니다. 이제 아주 좋은 안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전문(前文)을 정리해 봅시다.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북남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렇게

하고, 제목에서 제가 ‘담보’를 빼드리겠습니다.

남(박용옥) : 예.

남(채준석) : ‘고려’ 아십니까? ‘고려’ 아니예요? (웃음)

북(김영철) : 어-? 뭣이 자꾸 끼여요, 이거...

‘담보’를 빼드립니다.

북(박성진) : (탁자를 두드리며) 회담이 그러면 아니돼요.

북(김영철) : 여기 있잖습니까, 내 하나만 더...

북(박성진) : 회담도 도덕이 있어야 한단 말이요.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내 참자 참자 하니까... 그러면 안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린 말 안한다고.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남(박용옥) : 됐어요. 그만 합시다. 자 그만 해요.

북(김영철) : 다시 얘기합시다.

남(박용옥) : 가만있자, 지금...

북(김영철) :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합니다. 가만...

남(박용옥) : 가만있어, 내가 정리할게요.

제목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들 위한 부속합의서”- 됐죠?

북(김영철) : 예.

남(박용옥) : 그 다음은 전문입니다.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에 규정한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북(김영철) : 예. 그런데 표기상(表記上)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북남합의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는 이 ‘년괄호’를 넣읍시다.

남(박용욱) : 연괄호? 오, 꺾음표? 그 꺾음표를 넣자 이거지요?

북(김영철) : 예, 그 꺾음표를 열고, 그 다음에 두번째 “제2장 북남불가침”— 이것도 명백한, 고유하게 우리가…

남(박용욱) : 남북, 남북… 이렇게 넣자 이거지?

북(김영철) : 예— 그 ‘남북’으로부터 ‘합의서’까지… 또 ‘의’자는 꺾음표 밖에 놓고, “2장 북남불가침”— 이것은 또 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과 서문은 합의한 것으로 됩니까?

남(박용욱) : 음, 오케이

북(김영철) : 다음… 장별 제목을, 좀 봅시다.

남(박용욱) : 가만있어, 가만있어… 나도 좀, 나는 좀 화장실도 좀 갔다오고 그래야 겠는데… 한 15분간 좀 휴식합시다.

북(김영철) : 화장실이요?

남(박용욱) : 응 응, 한 10분? 10분간 좀 쉬고, 담배도 한대 태우시고…

북(김영철) : 이거…

남(박용욱) : 응 응, 그래서 금방 오죠. 10분… 지금 몇시야? 12시 5분이니까, 12시 15분에 오지요.

북(김영철) : 너무 늦지 뭐…

남(박용욱) : 어…? 그럼 12시 10분에 봅시다. 7분?

북(김영철) : 10분에 봅시다. (좌중 웃음)

남(박용옥) : 12시 10분!

북(김영철) : 응, 우리 군대라는기 시간이... 고지전투 뭐 세개씩이나 하겠소. 그렇게 하면...

남(박용옥) : 아, 이거 사람이 생리적 작용도 좀 풀 수 있고 그래야지...

* 휴식후 회의 속개

남(박용옥) : 그 다음에 제목...

북(김영철) : 누구 한분 아직 안들어 왔구만.

남(박용옥) : 들어 오겠지.

북(김영철) : 리영호대령! 시간... 실무가(實務家)인데 말이여, 시간개념이 딱딱 있어야지.

남(박용옥) : 허허허허...

북(김영철) : 군대는 첫째도 둘째도 시간입니다.

남(박용옥) : 옳소, 그 말에 동감이요.

남(이영호) : 시간을 좀... 제가 한 몇초 늦었습니다.

남(박용옥) : 허허허허— 자, 시인하시요. 시인할건 시인하고...

북(김영철) : 안됐습니다. 이거... (웃음)

남(이영호) :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모두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북(김영철) : 물론, 물론...

남(박용옥) : 자, 그 다음에는 제1장— 우리는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인데 귀측은 “무력불사용”— 제목을 이렇게 나왔단 말이

예요?

우리가 왜 두가지를 넣었느냐면, 먼저 우리측 얘기를 좀하면 우선 “무력불사용”- 하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의 표명이죠.

9조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무력불사용”- 하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의 표명이고, 여기에 우리가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넣은 거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표명했는데도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런 충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9조에 있는 무력을 불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하여 침략하지 않는다-..이런 것의 충분한 의미를 살리게 된다...

하나는 의지 표명이고, 하나는 그 의지를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하나의 객관적이고 가시적(可視的)인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이 제목으로도 더 완벽한거 아니냐- 장의 제목으로 완벽한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했어요.

북(김영철) : 예

남(박용옥) : 그러면 지금 귀측은 꼭 “무력불사용”- 그거 하나만 넣었는데... 여기 우리측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내용토의 안하고 제목부터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네 그려. (웃음)

북(김영철) : 아니, 원래 순서가 제목을... (어물어물)

집을 짓자면 먼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셋가래를 이고... 이런 그 말하자면 순찬(順次)데,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안에 있을 사람을 마

련해 놓고, 집을 짓는다 이 얘지요.

남(박용옥) : 아니, 집을 지을래며는 어떤 형태의 집을 지을까를 보고 기
등을 세우는 거지...

북(김영철) : 그래서, 그래서... 제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나는 지금 기본문제와 인연이 없는 것은 다 이제 뿌리치자는 게요.
그거... 기본문제 토의에 집착하자는 겁니다.

1장 제목인데, 귀측에서는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무력불사용... 우리가 “무력불사용”이라는 다섯개의 글자를
가지고 장제목을 정립한 것은 북남합의서 9조, 불가침 부분의 조항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남측위원 선생님들, 다... 9조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상기해 보십시오.

“제9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
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쌍방사이에 합의된 조항에 맞
게 제목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내용을 9조로 정립했습니다.

한 즉, 귀측의 제목은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 했는데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우리가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럼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가 기본합의서의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이거는 9조하고는 인연이 없습니다. 9조…

9조는 명백히 어떤 내용인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획적으로 무력을 가지고 침략하지 않는다— 이 조항이 9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제목은 합의서에 완전히 충실한 제목입니다.

원래는 “무력불사용…” ‘불침략’으로 해도 되겠지만, 침략(侵略)이라는 것은 무력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의미를 새기면 “무력불사용”— 하면 간단한 다섯개 글자로서 함축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서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라는 것은 담지 못합니다. 여기에…

남(박용옥) : 좋은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그렇다며는 “무력불사용 및 불침략”이라는 9조 안을 다 살리든가, 지금 “무력불사용”— 이것은 하나의 그 의지표명(意志表明)만 하는 내용가지고서는 이게 완전치 못하다—

그럼 우리가 한거는 “무력불사용”이라는 것은… 내가 또 애길 했지만 그냥 그 의지선언(意志宣言)한거다—

그럼 이 내용에… 최소한도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에는 그것을 우리 ‘불사용’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주어야 ‘무력불사용’ 의지가 관철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넣었는데… 만일에, 그 9조에 있는 그대로 하자— 그런다면 우리 안의 그 ‘침략조항’도 나

웁니다. 이것을 “무력불사용 및 불침략”이라 하든가, 아니면 우리쪽으로 받던가 하는 것이 지금 내 견해인데...

어째, 판 사람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임태순) :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북(김영철) : 에... 내가 좀 얘기하지요. 이 저...

남(이영호) : 아까 저 북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9조가 “계획된 침략, 계획된 의지적인 무력불사용”만을 나타내는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해석으로 저는 봅니다.

이 침략이라는 것이 반드시 계획된 침략으로만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발적인 충돌에 의해서 그것이 침략전쟁으로 돌변(突變)할 수도 있는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발적 전쟁도 막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남북간에 가져야 될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무력불사용”이라는 그런 어떤 의지적인 것 뿐만이 아니고, 우발적인 전쟁이 침략전쟁으로, 무력충돌이 침략전쟁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도 마찬가지로 9조의 기본정신에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여기에는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의 정신이 담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북(김영철) : 남측에서 말씀 다 했습니까?

내가 이거 다시한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의사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야기가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이제 리영호 대령이 얘기했는데, 9조에 대한 리해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동적인 문제입니다.

여기다 어디 우리 ‘우발적’이란 말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발적 무력충돌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공통된 인식을 우리가 부인(否認)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9조 사항에 영고 몰아갈 문제가 아니다— 그건 다른 데서 처리해야 된다 이기요.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걸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방지— 이걸 무슨 그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우발적 무력충돌이 없어야 됩니다. 남북간에 첨예하게 대치된 이런 현실하에선...

그러나 9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무력을 사용하고 침범·침략하는 걸— 이걸 반대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무력불사용”— 하면 단순한 의지의 표명이다...

제목 자체가 의지의 표명인 건 아닙니다.

제목은 뭐인가? 이 1장 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걸 암시, 시사하는 겁니다. 이게...

제목 자체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력불사용”이라는 게 뭐인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걸 영는기다, 이거... 이거만 주면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측위원장이 ‘불침략’을 넣으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침

략이라는 게, 고의적인 침략이 어디서부터 유발됩니까?

무력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유발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력불사용 - 하면 곧 불침략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력불사용”하면 크게 다른 무슨 뭐이 없겠는데...

남(채준석) : 제가 한마디 할까요?

남(박용옥) : 가만있어 보세요. 이게 지금 이 1장의 내용을 (북측에서)안 보고 얘기하니까,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나와요.

내용을, 내용을 한번 검토하고 얘길 합시다. 여기에...

북(김영철) : 내용은 그저 그런데, 우리는 어떤젠가...

“무력불사용” 문제를 전면적으로 담았고...

남(박용옥) : 지금...

북(김영철) : 귀측에서는 “무력불사용”과 “우발적 충돌방지”문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문제는 우리가, 그 말하자면 막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합의된 북남합의서의 9조에 충실하자면, 그 9조의 조항대로 하자면, “무력불사용”이 장제목에 타당하지 결코...

남(박용옥) : 무력불사용 및 ...

북(김영철) :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는 그 기본합의서 9조 내용과는 인연이 없다...

남(박용옥) : 아니, 아니,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좁게 해석하면 안돼요.

물론 ‘침략’이라든가 ‘전쟁’은 무력사용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럼 무력사용이 왜 되느냐?

어떤 ‘침범사태’가 있었다 그러며는 이 침범사태가 무력사용으로 가지... 이것이 무력을 사용해서 침범하는게 아니라, 어떤 고의적이 아닌, 상대방 관할구역에 침범하는 우발적 침범사태가 나왔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바로 무력사용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런 것이, 그것이 무력사용의 동기가 된다.

반드시 무력사용으로부터 침략이라든가 전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침략이라든가 무력사용의 의지가 없이도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범한 행위가 나왔을 경우에 상대방이 이걸 침범행위로 보기 때문에 무력사용이 나가고 거기서 부터 무력충돌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즉 9조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지, 지금 한쪽만 생각하시는 것같애. 김위원장이...

무력을 사용하는 거로 출발한다, 왜 무력 사용하게 되느냐? 그 앞의 그 단계를 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합리적인 거는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라는 것을 넣어야 아- 이 조항에, 이 장에, 무엇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줄 수가 있다는 거지. 내 얘기는...

북(김영철) : 내 얘기하는데... 그 알만 합니다.

다만, 어떤 것만 이거 우리가 장제목 하는데 리해를 같이 하겠는가?

우리가 이 북남불가침 부분의 9조 조항의 장제목을 정립하는 데서 “무력불사용”- 이 다섯개 이 글자는 지금 우리 쌍방이 다른 이의(異議)가 없습니다.

다만 “우발적 충돌방지”를 영는가, 안영는가 하는 문젠데 우리는 영

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데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영 무슨… 이거 조항을 내던지자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처리할 내용이다 이겁니다.

남(박용옥) : 다른 장으로?

북(김영철) : 예. 다른 데서 이제 이거 논의될 때 있다. 만약에 이제처럼 침략의 근본원인을 이렇게 터와서 올라가자면 “무력불사용별 우발적 충돌방지…” 또 다른 것도 제목을 달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제목은 다만 “무력불사용” 이 다섯가지만 우리가 합의본 거로 하고, 귀측에서 덧붙인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논의합시다.

다음 2장 제목…

남(박용옥) : 이거 내용토의도 안하고 그냥 장제목으로 들어가는가?

북(김영철) : 예. 장제목 토의를 먼저 합시다.

남(박용옥) : 이거 이래서 제목이 나오겠느냐, 이래 가지고…

북(김영철) : 나와요.

남(박용옥) : 2장 제목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똑 같으니 뭐

북(김영철) : 예. 2장은, 우리 2장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박용옥) : 우리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북(김영철) : 그러면 이것은 합의본 것으로 합시다. 2장 제목은-

남(박용옥) : 그렇시다. 2장 제목은…

북(김영철) : 다만 이제 그런 정도로 논리를 세운다면 우리는 분쟁의 평

화적 해결부분에다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하면 분쟁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이... 여러가지 형태로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분쟁이... 왜냐하면 우발적...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어떤 자연피해로도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 막는 대책을 여기다가 포함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가 북남합의서에는 “우발적 충돌”문제에 대한 건 우리가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주어진 10조의 완전한 합의된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장제목도 인식을 같이 한 조건에서 “우발적 충돌”, “우발적 침입”- 귀측에서 강조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다 열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 근원(根源)부터 막는다는 그런 제목을 달자고 이제 1장 제목에서 강조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분쟁이 일어나기 전 문제부터 여기다 열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박용옥) :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결정은...

북(김영철) : 그래서 아니, 이걸 내가...

남(박용옥) : 그거 결정은 우리가 토의를 하고서 결정합시다.

앞에다 넣을 것이냐... 하여간 우리 조항토의를 해보고 1장 제목을 갖다가...

북(김영철) : 여기서 명백히 하는건 뭐인가?

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장은 우리가 합의를 봤습니다.

남(박용욱) : 또 장의 명칭을 합의를 봤습니다.

북(김영철) : 예. 합의를 봤습니다. 3장이 무엇입니까?

남(박용욱) : 3장은 우리는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그리고 귀측은 “불가침 경계선”- 했는데 기본합의서에는 ‘구역’까지 얘기를 했죠.

북(김영철) : 예-

남(박용욱) : ‘경계선’만 할게 아니라, 이젠 뭐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계선과 구역을 우리가 동시에 기본합의서 11조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말대로 살려주는 것이...

북(김영철) :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그런데 내 하나 이거...

남(박용욱) : 뭐 또 이거 하나고 뭐고... (웃음)

북(김영철) : 이젠 내가 얘기합니다.

군사학적인 개념에서 ‘구역’이란 거는 좁은 의미입니다. 원래는...

레하면 귀측에서는 군사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남(박용욱) : ‘구역’이 ‘경계선’보다 작은 개념이다?

북(김영철) : 아니, 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구역’이란 의미는 레하면 우리는 원래 기본합의서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불가침지역- 이렇게 개념을 크게 우리가 정립하자고 했습니다.

구역이라는건 레하면 군사적인 단위에서 ‘대대(大隊)’-무슨 이 쪼그
만 단위라는 감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원래 “불가침 경계선 및 지역”- 이렇게 하자 했는데,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다고 해서 귀측에서 ‘구역’으로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줬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너무 왜소한, 작은 감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는 크게 “불가침 경계선”- 하면, 경계선을 그어놓으면 경계선안은 북
의 것이고, 그 다음 귀측은 남...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박용옥) : “경계선”- 하며는 우리가 이제 “지상경계선”이 있고, 지상
군사분계선은 이제 돼있고, 해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관할구역으로
돼있어요.

공식적으로, 쌍방이 공식적으로 무슨 뭘 해가지고서... 선으로 한다면
선개념(線概念)이 지금 없었다고.

그래서 해상구역으로 우리가 표시를 했다고.

그것이 기본합의서 11조에도 한거니까, 이거는 11조 명칭대로 하는
게 낫다 이거지.

북(김영철) : 예, 알만 합니다.

그럼 저 우리측 위원동무들, 이 “불가침경계선 및 구역”- 하는데 다
른 의견들이 없습니까?

“불가침경계선 및 구역” 하는데...

북(원동연) : 그거 뭐 하나, 크게 양보해 주지요.

북(김영철) : 그러면...

남(박용옥) : 원위원, 참 큰거 양보하누만. 이게 양보? (웃음)

북(김영철) : 그렇게 합시다. 제3장, 불가침경계선 및 구역 - 남측이 내놓은 안대로 우리가 크게 양보를 합니다.

남(박용옥) : (대소하며) 그게 그렇게 큰 거요? 지금...

남(채준석) : 아니, 기본합의서에 있는 그대로인데 뭐.

북(김영철) : 그 다음에, 4장 - 다만 내 여기서 강조할 게 있습니다.

불가침 경계선구역에서 조문을 정립했는데, 귀측에서는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해상불가침 경계선만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반드시 공중불가침 경계선문제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박용옥) : 그건 조항 토의할 때 내가 얘기할 테니까...

북(김영철) : 아 좋아요! 내가 왜 그런가. 미리, 미리... 내가 왜 이거 얘기하는가 하니까 공중불가침 경계선 문제를 설사 정해도 상당한 정도로 사실상 공중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비행기를 경계선구역에서 봐도 그게 린접(隣接)한 비행기는 마치도 자기측 구역에 들어온 것 같아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올려가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공중불가침 경계선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됩니다.

그리고 항차 지상불가침 경계선문제를 논했다, 그리고 해상불가침 경계선문제를 논했다, 하는데 어째서 공중불가침 문제는 쭉 빼놓습니까?

남(박용옥) : 아, 그걸 내가 얘기하지요.

북(김영철) : 그리고, 내 하나 얘기하지요.

남(박용옥) : 그걸 왜 뺐는지 얘기를 좀 해주지.

북(김영철) : 아니, 아니... 토론하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모든 것이 군대로 말하면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요. (남측위원들 실소)

군사란 건 있잖습니까? 빼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군사(軍事)하면 모든 것이 아주... 무슨 말이나 두리뭉실 얘기하는데 군사처럼 가장 과학화되고, 그 말하자면 최고의 과학지식이 집약된 그런게 없습니다. 그만큼...

그러기 때문에 지상불가침 경계선은 정리하고,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정립했는데 공중불가침 경계선은 쭉욱 빼놓는다... 이건 사실상 상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논의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요.

남(박용옥) : 그건 나중에... 거 우리가 명쾌하게 내 얘기할 테니까.

북(김영철) : 예, 그 다음 장제목—

남(박용옥) : 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이거 아주 똑같구만.

북(김영철) : 예. 이거는 우리가 4장이고, 귀측은 5장입니다.

남(박용옥) : 5장이네?

북(김영철) : 4장인가 5장인가 하는 관계없이 이 명칭은...

남(박용옥) : 명칭은...

북(김영철) : 장제목은 합의 본 것으로 누르겠습니다.

수원동무들, 정확히 기록해 놓으시요.

* 누르다=(계획같은 것을) 토론 끝에 정식 계획으로 결정하다.

남(채준석) : 그... 점(點)이 틀린데, 점이...

북(김영철) : 눌렀습니다. 자꾸 저... 여기서 위원장들이...

남(채준석) : 아니, 요거 그 점이 틀리다고요.

북(김영철) : 점이 말입니까?

남(박용옥) : 아, 우리 건 점이고, 북측은 감마다- 그건 문안정리 때...

점하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데, 우린 습관이...

북(김영철) : 예, 그리고 장제목 정립하는 데서 우리는 군사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귀측에서는 뭐 있는고 하니까...

남(박용옥) : 군사공동위원회는 우리가 이미 된거니까...

북(김영철) : 예, 가만있어요. 아 글썸... 우리는 군사공동위원회가 있고
귀측에서는...

남(박용옥) : 우리는 5장에 있지. 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준수사항...

북(김영철) : 예. 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박용옥) : 응 응

북(김영철) :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남(박용옥) :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5항의 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
준수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14조 사항이요. 기본합의서 14조 사항이요.

북(김영철) : 그러니까 우리 의도를 다시 한번 내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북남군사공동위원회’라는 장제목을 설정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가침리행을 위한 포괄적인 부속합의서를 생각했습니다.

귀측에서는 지금 그것이 무엇이나, 자주 그렇게 묻질 않았습니까?

포괄적인 단일 부속합의서란 무엇이나?

그것은 제2장 불가침부분의 9조로부터 14조까지 모든 장을 빼지 말고(빠짐없이) 담은 부속합의서가 포괄적인 부속합의서다.

그런데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문제는 불가침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속합의서로의 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여기 영자— 또 앞으로 불가침리행을 위한 부속합의서가…

남(박용욱) : 군사공동위원회? '

북(김영철) : 예— 체모를 갖춰서 그 한 조항을, 그저 한 장을 영는기다.

그리고 역사적인 문건으로 후세(後世)에 정확히 남기기 위해서 좋다.

척 보다가 아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영자는 쥘니다.

그리고 한번 가서 다 보십시오.

지금 정치분과위원회가 운영되는데, 이 화해합의서(和解合意書)에는 다 리행기구가 있습니다. 리행기구를 박아 영었어요.

또 협력·교류분과위원회에서도 리행기구문제를 소원시(疎遠視)하지 않았습다. 리행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사분과위원회에는, 이 불가침합의서에는 무슨 거기서 무슨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리행한다는 걸 영지 않아도 이 리행은 어디서 하느냐 하는 걸 박아 영자는 쥘니다.

제가 이제 말한 이 내용이 맞는가 하는 것을 다른 분과위원회에 가서 들춰 보십시오.

정치도 리행기구가 있습니다. 협력·교류도 리행기구가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 군사... 그 말하자면, 남들이 다해서 체모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체모가 허술한 거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좀 서글프다고 그랬는데, 귀측에서 무슨 '병신부속합의서'라 해서...

다른 의미가 있는젠기 아니라... 이렇게 영을기, 넣을기 다 들어 안갔을 때 우리가 그걸 녀두에 둔집니다. 거 뭐 다른 게 없어요.

무슨 그 누구를 모욕한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속합의서의 체모를 제대로 갖추자.

말하자면 열달 다 찬 아이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오늘 결론 못할거 같아요.

그 다음 이 귀측에서는 우리가 없는... 이제 군사분과위원회 무슨 저회의... 추가적인 하나의 장을 영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리해상 앞으로 군사분과위원회에서 불가침리행을 위해서 이번에 포괄적인 부속합의서를 지혜를 짜고, 모으고, 다 만들었지만, 또 무시기 있을 수 있다! 하면 그걸 만들면 됩니다.

그 무슨 장제목을 설정할 필요도 없다구요.

사실 그런건... 그건 뭐 다 할 수 있는게요.

남(박용욱) : 이것 때문에 서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 준거요. 이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이 없으면 그 조항 받지를 않아요.

북(김영철) : 그리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불가침부분의 부속합의서다—
(이것이) 불가침 어느 조항의 부속합의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군사공동위원회는 불가침부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생각해 보라는 것… 다른 모든 분과위의 부속합의서에는 리
행기구가 있다—

남(박용옥) : 김위원장!

북(김영철) : 어째서 우리는 그거 밝히지 않겠느냐? 밝히자.

밝히는 데는 이미 그와 관련된 부속합의서 나온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게 어디 쯤에 있다는 거를 밝혀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수정·발효는 장이 같습니다.

제목이 같지요?

남(박용옥) : 가만 있어봐요…

북(김영철) : 수정·발효— 들춰 보십시오.

남(박용옥) : 수정·발효는 같고…

북(김영철) : 예— 그러면 수정·발효의 장제목도 일치했습니다.

남(박용옥) : 그건 일치됐고… 그러면 지금 공동위 사항하고, 추가적인 사
항인데— 그 분명히 한거는 아까 “군사적 대결상태”에 대해 전문에 넣
은 거는 그래도 분과위원회는 기본합의서 14조하고, 여기에 우리 부속
합의서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근거로 우리가 그걸 받
은거란 말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것만 유보(留保)됐구만.

공동위원회 거하고, 귀측 4장하고 우리측 5장이...

북(김영철) : 장제목에서 이제 뭐 있는고 하니까 제1장, 우리는 “무력불사용” - 했는데 귀측에는 그저 “우발적 충돌방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군사공동위원회’란 장제목이 있는데 귀측에선 없습니다.

남(박용옥) : 응, 그건 없다.

북(김영철) : 그리고 우리측에서는 그 군사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후 문제(事後問題)가 있는데 우린 그것이 없습니다.

남(박용옥) : 없고.

북(김영철) : 그래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토의는 장제목까지 토론하고, 그만 하자는 제의합니다.

남(박용옥) : 또 제목하고 전문은 합의가 됐고...

북(김영철) : 예 -

남(박용옥) : 참 큰 것 많이 했네요. 큰 것 합의한 것 같은데...(웃음)

북(김영철) : 그래서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토의에서 좀 효율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접촉”을 가질 걸 제의합니다.

남(박용옥) : 위원장접촉을 한번? 내용 토의를 위해서 한번 할 필요가 있겠죠. 언제 하면 좋겠어요? 언제...

북(김영철) : 내 생각에는...

남(박용옥) : 빨리 해야지?

북(김영철) : 예. 빨리해야 될 것 같은데...

남(박용옥) : 빨리 해야지, 거...

북(김영철) : 몇일로 할까... 한 그저 23일정도 하는게 어떻습니까?

남(이영호) : 다음 주 목요일이죠?

남(박용옥) : 7월 23일?

북(김영철) : 예.

남(박용옥) : 7월 23일 - 한주일 뒤?

(우리측 위원들에게) 어디 뭐 다른 데하고... 괜찮아요?

자 - 7월 23일 위원장접촉으로 할까요?

북(김영철) : 예. 위원장접촉 합시다.

남(박용옥) : 위원장접촉. 그 다음에 그 위원명단은 우리가 후에 통보하지.

북(김영철) : 위원장접촉은 무슨 저 명단교체로 다르게 할 필요 있소?

남(박용옥) : 할 필요 없지. 그러면 위원은...

북(김영철) : 위원장들이 그저 나오게 되는기고...

남(박용옥) : ...하는데, 그 다음에 같이 올 위원은?

북(김영철) : 그 다음에 수원(隨員)들 한 두어명 데리고 나옵시다.

남(박용옥) : 2-3명으로 할까?

북(김영철) : 그리고 위원접촉에서는 명실공히 위원들이 나오고.

남(박용옥) : 응, 위원들이 나오고.

북(김영철) : 예. 그 다음 위원장접촉엔 위원 한명과 수원 두명을 데리고

나와서, 이래서 세명 정도 함께 하면 어떻습니까?

남(박용옥) : 위원, 위원 한명?

북(김영철) : 위원장하고 수원 두명가지고 데리고 나오면...

남(박용옥) : 위원장접촉에서... 수원이 우리 위원가운데 얘기하는거요?
아니며는...

북(김영철) : 아니, 위원은 위원이고 수원은 수원이지.

남(박용옥) : 그러니까 위원장접촉에서 위원장 한명하고...

북(김영철) : 수원 두명.

남(박용옥) : 위원 둘로 하지. 위원 둘로 하고 수원?

북(김영철) : 그건 또... 위원장 하나하고 위원 둘이면, 그건 본질에서 뭐
이나 하니까 소분과회의(小分科會議)와 같단 말이여.

남(박용옥) : 아니야, 아니야...

북(김영철) : 위원장접촉이란건 원래 위원장대 위원장의 개별접촉입니다.

남(박용옥) : 아니, 위원장접촉에도... 아니예요. 왜냐면 위원장접촉도 물
론 다 권한을 가지고 나오지마는, 또 필요하며는 같이 또 견해도 교환
하고 하는 그거는 필요하니까...

북(김영철) : 내 하나 이야기하지.

남(박용옥) : 위원 둘하고 수원 둘, 이렇게 하지.

북(김영철) : 내 하나 얘기합니까?

남(박용옥) : 응.

북(김영철) : 지난시기 저 북남합의서를 합의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핵화공동선언 합의할 때도 그렇고, 핵통제공동위에도 내가 많이 나와
봤는데... 벌써 사람이 많으면 옆파리에서 자꾸 얘기해서 합의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없습니다.

원래 “위원장접촉”이란 거는 위원장끼리 사실 흉금(胸襟)을 놓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접촉이지.

남(박용옥) : 그야 당연하지.

북(김영철) : 그래서 위원장접촉은 우리 위원장들이 들이 나오고, 그리고 수원들은 기록을 위해서 나와라.

남(박용옥) : 음...

북(김영철) :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눌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안을 위원들한테 시킵시다.

남(박용옥) : 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건 좋아요.

위원장이 먼저 대체토의(大體討議)를 다 해놓고 위원접촉을 시키는 데... 위원장접촉에서도 내 생각으로는 위원 한 두명 나와서 같이 견해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지.

북(김영철) : 아, 위원장이 다 준비해 가지고 오라우! 그 저 크게 준비해 가지고 말이여.

남(박용옥) : 우리 지금 김영철 위원장은 그냥 혼자 다 하는 모양인데?

북(김영철) : 어디가?

남(박용옥) : 다른 정치분과위원회는 어떻게 했던가?

거기에는 위원 한 2명씩 있었지?

남(이영호) : 예.

북(김영철) : 근데 그건 문제가... 사실 그건 위원장접촉이 아니요.

남(박용옥) : 아니, 위원장접촉도 위원장 중심으로 하는 거지.

위원장 중심으로 하고 흉금 터 놓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위원이 있다고 그래서... 왜 지난 번 남북고위급회담때...

북(김영철) : 그건... 그때는, 그때는...

남(박용옥) : 그때 위원장접촉이었지. 그때 두어명씩 다 하고 했지마는, 밤을 새긴 섰지마는 다 괜찮았잖어?

북(김영철) : 위원장접촉이란 말요. 그래 위원장접촉 하자는 말이요.

남(박용옥) : 그러나 위원장접촉을 하는데... 필요해요. 위원 들을 합시다.

그 다음에 위원장 중심으로 하는 거지. 필요하며는 위원들하고 또 애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것이 좋겠어요.

7월 23일 위원장접촉을 하되 위원 들, 그 다음에 위원이 나와서 같이... 그러면 수원 없이 하든가.

북(김영철) : 아니, 수원은 기록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고.

남(박용옥) : 그러니까...

북(김영철) : 수원은 있어야 되고...

내 얘기합니다. 위원장접촉이란 말은 위원장대...

남(박용옥) : 아, 내가 뜻은 알겠어요.

북(김영철) : 위원장대 위원장대 개별접촉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위원장대 위원장, 개별접촉으로 하자는 겁니다.

왜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다른 분들이 듣고 해서 개별접촉을 하고...

남(박용옥) : 알었어. 내가 좀 판단해 가지고 통보를 하지.

북(김영철) : 예.

남(박용옥) : 통보를 할게, 그럼 날짜는 7월 23일로 잡고.

북(김영철) : 예. 23일로 하고, 그러고 내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위원장대

위원장하는 건 자주 얘기를 드려도 듣는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표시한 단 말예요.

레하면 하늘 중천에 떠있는 달은 하난데 그 달을 보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 않소?

내가 말하는 데도 저쪽 분은 데까닥 동요해서 말야, 빠치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 합의의 효율성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찾자니까 위원장대 위원장, 개별접촉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수원들은 나와서 기록해라.

위원접촉을 또 하자는 겁니다.

위원접촉은 어느 단계에 가서 하나?

위원장들이 기본적으로 눌러는 다음에 문안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때는 위원들을 또 영쥬습니다.

남(박용옥) : 그걸 우리가 간단히 좀 검토를 하고 통보를 할테니까...

북(김영철) : 그럼 난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남(박용옥) : 7월 23일날, 시간은... 10시?

북(김영철) : 예. 그건 원래, 원래...

남(박용옥) : 장소는 어디서 하나?

북(김영철) : 눌러 놓은대로 - 합시다.

남(박용옥) : 장소는 그러면...

북(김영철) : 장소를 어디서 하겠는가 - 그건 후에 통지합시다.

남(박용옥) : 장소도?

북(김영철) : 예.

남(박용옥) :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접촉을 하느냐, 위원 두명이
같이 참여하느냐- 그건 좀 검토를 해가지고 통보를 하도록...

북(김영철) : 예, 위원장접촉입니다. 틀림없이- 위원장...

남(박용옥) : 아, 위원장접촉인데... 인제 위원도 가 있는 위원장접촉도 있
을 수 있고, 개별접촉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북(김영철) : 원래 위원을 양쪽에 대동하면 소군사분과위원회인데, (남측
말대로 하면) 또 소군사분과위원회다...

이건 리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남(박용옥) : 자, 그러며는... 배도 고프신 모양이지? 자꾸... (웃음)

자,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그러면 다음 위원장접촉은 7월 23일, 시간 10시.

장소와 위원포함 여부, 이걸 별도로 우리가 검토해서 통보한다- 그
렇게 하고 오늘 회의 끝냅시다.

남(이영호) : 제7차 회의는...?

남(박용옥) : 7차... 자, 7차 분과위원회... 그걸 좀 해야지.

북(김영철) : 7차 분과회의는 우리가 위원장접촉에서 늘러는 다음에 정해
도, 위원장끼리 늘러도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때처럼 무슨 그 회의를 류산시키거
나 그런 건 아닙니다.

남(박용옥) : 아마...

북(김영철) : 위원장들이 만나서 한다. 그건...

남(박용옥) : 분과위원회도 9월 1일전까지는 하나 할만큼 뭐 해야겠지.

북(김영철) : …그렇게, 그렇게 합니다.

남(박용옥) : 우선 그것을 위원장접촉에서, 다음 회의를 결정하도록 하지.

북(김영철) : 그리고 제가 저 마지막에 끝나면서…

그때 저 김희상(金熙相)위원이 자꾸 끝날 때마다 무슨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당히, 그 누구 마따나 불유쾌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내가 내 입장에서 마주 앉아서 얘기하게 되면, 정확히 얘기할 건 뭐인가…

례하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재개문제, 포커스렌즈같은 훈련문제, 대화일방인 상대방에 대한 군사연습이 자행된다면 그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 리행합의서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니가 합의를 존중하려면, 민족앞에 한 약속을 리행하려면.

그리고 핵문제에 관한 립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태도변경이 명백치 않다는 것 - 이렇게 제대로 돼야 모든 합의가 좋습니다.

그래 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서 나는 귀측에서 긍정적인 호응이 있고, 앞으로는 오늘 우리 뜻을 충분히 얘기한 것만큼, 많은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나오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회담 끝마칩시다.

남(박용옥) : 김위원장,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하면 우리는 금년도 T/S중단 결단내릴 때 약속 지켰는데…

그때 다 있잖았어요? 핵 그거 할 때, 그 약속 지켰는데…

북(김영철) : 우리도 다 지켰지.

남(박용옥) : 그때 귀측은 그 약속을 안지켰어.

북(김영철) : 우린 다 지켰어.

남(박용옥) : 그걸 그만큼 유념해 두셔야 된다고. 자, 수고했어요.

북(김영철) : 예.

서 기 1992 년 8 월 1 일 50 부 발 간

문 성 인 쇄 주 식 회 사 (738-7434)
738-0619

참 여

통 일 원 통 일 정 책 실

5 급 임 재 균